

▶ 참여연구진

저 자 양원탁, 이원도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면서 연계·협력에 기반한 초광역 발전 전략에 대한 요구 증가
- 2024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초광역 연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6조)
-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24.6.)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 수립이 추진되었으며, 지역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선정이 필요
-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초광역 연계·협력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실행력을 갖춘 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 필요

□ 연구목적

-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법·제도적 기반, 최근의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정책의 차별적인 특성을 도출
- 초광역 연계·협력 정책과 관련한 유사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체계와 판단기준을 도출
- 초광역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선정 기준과 체계를 제안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를 도모

2. 연구 주요내용

□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 법률상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사업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취지와 특성을 분석
-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과 시도발전계획(안),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 등 관련 계획의 방향과 사업 특성을 검토하고 정책 동향을 파악

□ 유사 정책 사례 분석

- 계획의 유사성을 지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내륙권 발전계획의 목적과 추진체계, 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적 특성을 분석
-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고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적 특성을 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관련 분야 실무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합리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을 도출함

□ 사업선정 기준 및 체계 제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행력을 갖춘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선정 기본방향을 제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과 추진절차 및 체계, 세부적인 지표체계를 제안하여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행력을 갖춘 사업 선정 방안을 제안

3.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 및 체계(안)

1) 기본방향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 상향식 체계 확립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의 목표는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이고, 상향식의 추진체계를 지니므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지역사회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해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갖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 및 기초-광역-행안부 간 다층적 협의·조정이 필요

□ 상위 법률 및 계획과의 조화와 전략·분야간 균형성 확보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상위 법률과 유관 계획, 해당 정책 내 기본방향 등과 유기적인 정합성을 갖추어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확보
-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구성하는 부문 및 추진 전략별로 사업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함

□ 실행력을 갖춘 사업의 선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 법률의 시효기간(2032년)을 고려하여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닌 계획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신규 국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반영
- 신규사업은 정책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의 성숙도와 구체성 등 실현가능성이 면밀하게 검토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

□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의 시너지 창출

- 지자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초광역 협력이 실현되도록 함
- 백두대간, 수자원 등 지역의 고유 자원과 국토 중심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계·협력 범위를 확장
- 지자체간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의 방향성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마련함

2) 사업선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안)

- 법·제도, 사례분석, 전문가 설문, 시도 간담회를 통해 정책부합성, 실행가능성, 성과창출가능성, 지속가능성, 차별성과 연계협력성의 선정기준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기준(안)〉

구분		내용
사업 공통 선정 기준	정책부합성	법률·정책 취지·목적과의 부합성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 연관성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 연계성
	실행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지역사회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사업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지속가능성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영향 정도		
차별성	유사·중복성 검토 및 지역 특화자원 연계성	
가점 항목	민자유치 또는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한 노력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추가 기준	연계·협력성	연계·협력의 수준과 역할 분담의 균형성
		연계·협력의 시너지 창출 효과성
	가점 항목	3개 이상 시·도의 연계협력 사업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통, 기존, 신규, 연계·협력 등 사업 유형별 체크리스트(안) 마련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안)〉

구분	내용	O	X	비고
공통 기준	1.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2. 국정과제, 공약 및 기타 상위계획 등과 정합성을 확인하였는가?			
	3.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연계성이 있는가?			
	4. 사업의 추진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사업 계획기간은 법률의 시효기간(2032년) 이내에 해당하는가?			
	6. 사업의 정량적, 정성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7.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존 사업	1. 사업예산의 기 투입 또는 차년도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3.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또는 상위계획상의 근거가 있는가?			
신규 사업	1.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2.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가?			
	3.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미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없는가?			
	4. 사업추진에 관한 법적 규제나 제약사항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5. (SOC 사업) 해당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연계 협력 사업	수시로 지자체간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였는가?			
	2.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3.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사업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는가?			
	4. 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는가?			
	5. 협력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3) 사업선정 추진 방향(안)

□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취지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적합성 검토 및 협의·조정, 시·도 발전계획(안) 수립을 담당

- 행정안전부는 사업 선정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업 평가, 사업 선정에 대한 시·도와 협의·조정,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관계기관 협의 담당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사업선정 기준에 맞추어 사업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의 조정·보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컨설팅의 역할을 담당
 -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지역개발,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학식을 갖추고 지역의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사업별 평가 및 조정·협의를 거쳐 선별된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추진절차

-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절차, 일정, 참고사항 등을 확정하여 사업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달
- 시·군·구와 시·도는 사업선정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부적정 사업을 검토하며, 광역과 기초 차원에서 사업의 조정·협의를 진행함
- 지자체는 조정·협약이 완료된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시·도 발전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제출함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부적정 사업 제외 및 컨설팅 의견을 제시함
- 자문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토대로 시·도와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조정·협약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결과 확정
 - 사업 선정 기준에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절차에 반영
- 확정된 사업을 반영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주요내용	8

제 2 장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검토

제1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1. 법률의 제정 목적과 구성	13
2. 법률상의 추진체계	15
제2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6
1. 계획의 개요와 구성	16
2. 계획의 방향과 절차	18
3.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21
제3절 정책 동향	29
1. 정책 추진 동향	29
2. 시도 발전계획(안)	3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7
1.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기준 필요	37
2. 시·도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필요	38
3. 지자체 발굴사업의 합리적 검토·조정을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마련	38

목 차

제 3 장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43
1. 분석 목적과 분석 틀	43
2. 사례 선정	44
제2절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사례	46
1. 정책 개요	46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52
3. 사업 선정기준 또는 항목	56
제3절 지역발전위원회의 연계협력사업 선정 사례	58
1. 정책 개요	58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60
3. 사업선정 기준 또는 항목	63
4.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6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68
1. 선정기준 후보 도출 및 의견수렴 필요성	68
2. 정책 목적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 마련	69
3.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 필요	70

제 4 장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75
1. 조사 개요	75
2. 응답자 현황	7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77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여건	77
2. 사업선정 절차와 추진체계	83
3. 사업의 선정 기준	8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1
1.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별도의 유형 구분 및 선정체계 구축 필요	91
2.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범위 설정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92
3. 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안) 마련 및 지자체 의견수렴 필요	93

제 5 장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및 추진체계(안)

제1절 기본 방향	99
1. 사업 선정의 기본방향	99
2.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 기본방향	102
제2절 사업 선정 기준(안)	104
1. 사업 공통 선정 기준(안)	104
2.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기준(안)	106
3. 지자체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안)	108
제3절 사업 선정 추진 방향(안)	109
1. 추진체계(안)	109
2. 추진절차(안)	110
3. 연계·협력사업의 범위와 지자체 참고 절차	113
참고문헌	115
부록1: 전문가 설문조사지	117

표 목차

표 1-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6
표 1-2		연구 방법	7
표 2-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	14
표 2-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의 추진체계	15
표 2-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개요	16
표 2-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내용	17
표 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18
표 2-6		시·도 발전계획의 내용	20
표 2-7		자연환경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22
표 2-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보호지역 현황	23
표 2-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계획상의 분야별 계획	24
표 2-10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보호지역 현황	26
표 2-1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관리대책 전략별 추진계획	28
표 2-1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	31
표 2-13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사업비 기준)	32
표 2-14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기투자여부 기준)	33
표 2-15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별 현황(광역 기준)	34
표 2-16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별 현황(기초 기준)	35
표 2-17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전략 및 지역별 현황	36
표 3-1		사례분석 틀	44
표 3-2		사례 선정 기준	44
표 3-3		사례 선정 결과	45
표 3-4		발전종합계획별 주요내용(해안권)	48
표 3-5		발전종합계획별 주요내용(내륙권)	49
표 3-6		중부내륙연계 권역과 중복되는 내륙첨단산업권 핵심사업	50

표 3-7		중부내륙연계 권역과 중복되는 백두대간권 핵심사업	51
표 3-8		백두대간권 및 내륙첨단산업권의 공간구상 및 방향	52
표 3-9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선정단계(2010년 당시)	54
표 3-10		해안권·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선정 기준	55
표 3-11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의 개발사업 평가항목	57
표 3-12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개요	59
표 3-13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구성	60
표 3-14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평가 프로세스	61
표 3-15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선정기준	63
표 3-16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세부 평가항목	64
표 3-17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원칙과 지향점	65
표 3-18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절차	67
표 3-19		사업 선정 기준으로서 검토 가능한 항목	68
표 4-1		설문조사 개요	75
표 4-2		응답자 현황	76
표 4-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77
표 4-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응답 분포	78
표 4-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79
표 4-6		법률 제6조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에서 시급한 요인	82
표 4-7		지자체의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제안시 자체 검토항목 우선순위	84
표 4-8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간 연계협력의 범위(중복 응답)	84
표 4-9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적절한 자원 배분 수준(평균)	85
표 4-10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평가를 위한위원의 수	85
표 4-11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평가위원의 자격 검토 항목	85
표 4-1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86
표 4-13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정책부합성)	87

표 목차

표 4-14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실행가능성)	88
표 4-15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연계협력성)	88
표 4-16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성과창출가능성)	89
표 4-17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지속가능성 및 기타)	90
표 4-18	시·도 간담회를 통한 사업선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94
표 4-1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 간담회 주요내용	95
표 5-1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기준(안)	107
표 5-2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안)	108
표 5-3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상의 연계·협력의 범위(안)	113
표 5-4	중부내륙연계발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의 참고 프로세스	11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10
그림 2-1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19
그림 2-2 시·도 발전계획안 작성시 사업조사 양식	21
그림 2-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자연환경 관련 현황	22
그림 2-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임업 특화도 현황	25
그림 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관리대책의 기본 방향	27
그림 2-6 공무원 설명회 및 중부내륙 발전포럼 개최	29
그림 2-7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 체계도(안)	30
그림 3-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권역도	47
그림 3-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선정단계	54
그림 3-3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선정 프로세스	56
그림 3-4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사업 선정 프로세스	61
그림 3-5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절차	62
그림 4-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80
그림 4-2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에서 시급한 요소에 대한 응답 분포	81
그림 4-3 지자체의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제안시 자체 검토항목 우선순위	83
그림 4-4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분포	87
그림 5-1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110
그림 5-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절차(안)	112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연계협력 논의 증대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면서 연계·협력에 기반한 초광역 발전 전략에 대한 요구 증가
 - 2024년 수도권의 GRDP 비중은 52.8%에 달하며,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9년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지속 증가(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 수도권으로 집중이 더욱 심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략을 넘어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의 개별 지자체 단위 개발만으로는 지역 경쟁력 제고가 한계에 발생하면서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증대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2024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초광역 연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백두대간의 지형적 제약, 수계로 인한 단절로 개발이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통합국토 연계협력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제정
 - 충북을 중심으로 8개 시·도가 중부내륙지역이 공유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실행 주체로 참여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음

-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6조)
 - 발전종합계획은 연도별 사업계획과 시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됨
 - 발전종합계획(안)은 사업 간 유기적 관련성,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 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시행령 제3조)

□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발굴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24.6.)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 수립이 추진 중이며, 지역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선정이 필요
 - 2024년 6월 행안부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고,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안)을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발굴된 사업이 215개(약 101조 원 규모)에 달해 사업의 선별 및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실행력을 갖춘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면서 타당성을 갖춘 사업의 체계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
 -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사업 선정의 절차나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지자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정된 자원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실효성과 실행력 있는 발전계획(안) 마련이 필요
 -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연구목적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법·제도적 기반, 최근의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해당 정책의 특성과 차별적인 요소를 도출함
 - 초광역 단위 연계협력 정책과 관련한 유사 지역정책 및 계획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체계와 판단기준을 도출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정책 목표와 연계협력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업선정 기준과 체계를 제안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를 도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부내륙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설정
 - 법률 제2조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인접 시·도가 많아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으로 정의됨
 -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8개 광역시·도에 걸친 지역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지정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시효기간과 발전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고려하여 2026~2032년(7년)으로 설정하였음

표 1-1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	지자체	비고
대전(3)	동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3)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강원(2)	원주시, 영월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2)	천안시, 금산군	
전북(1)	무주군	
경북(5)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출처: 행정안전부(2024)

2. 연구의 방법

□ 정량적 분석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지역개발, 연계협력 분야 실무, 전문 지식을 지닌 갖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 지표체계 구성 및 항목별 중요도, 적정 선정 프로세스(대상, 절차, 주체 등)에 대한 응답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도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

□ 정성적 분석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연계·협력 관련 계획수립 또는 사업 선정 사례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수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및 동법 시행령, 수립 지침,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계획(안) 등 법률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정책의 목적과 방향 등 파악
 - 계획 수립 또는 재정투자 사업 선정에 관한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조사·분석의 설계, 도출된 선정 기준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 표 1-2 | 연구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정량 분석	기술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현황 분석 • 지역별, 사업유형, 부문별 사업 특성 파악 	시·도 발전계획(안)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자체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 지표체계 구성 및 항목별 중요도, 적정 프로세스 등 	공무원/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정성 분석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 재정투자 사업선정 기준/절차에 관한 유사 사례 분석 	법률, 계획(안), 지침, 보도자료, 보고서 등
	자문/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의 타당성 관련 전문가 자문 • 도출된 선정 기준(지표체계 및 프로세스) 적절성 자문 	지역개발/도시계획, 타당성 분석 전문가

3. 연구의 주요내용

1)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 법률상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사업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취지와 특성을 분석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법률의 구성, 정책의 추진체계 등을 바탕으로 취지와 법률상의 주요 특성을 분석

□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시도발전계획(안) 분석

- 관계 법률과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발전종합계획의 목적과 주요 내용, 계획의 수립 방향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토
-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도발전계획(안)과 자연환경계획(기후부) 및 산림관리대책(산림청)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

2) 사례 분석

□ 초광역 및 연계협력 사업 선정 사례 분석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해안권·내륙권 발전계획의 목적과 추진체계, 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분석
-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상의 특성을 분석

3)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수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중앙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여건, 사업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성 또는 실무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를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4)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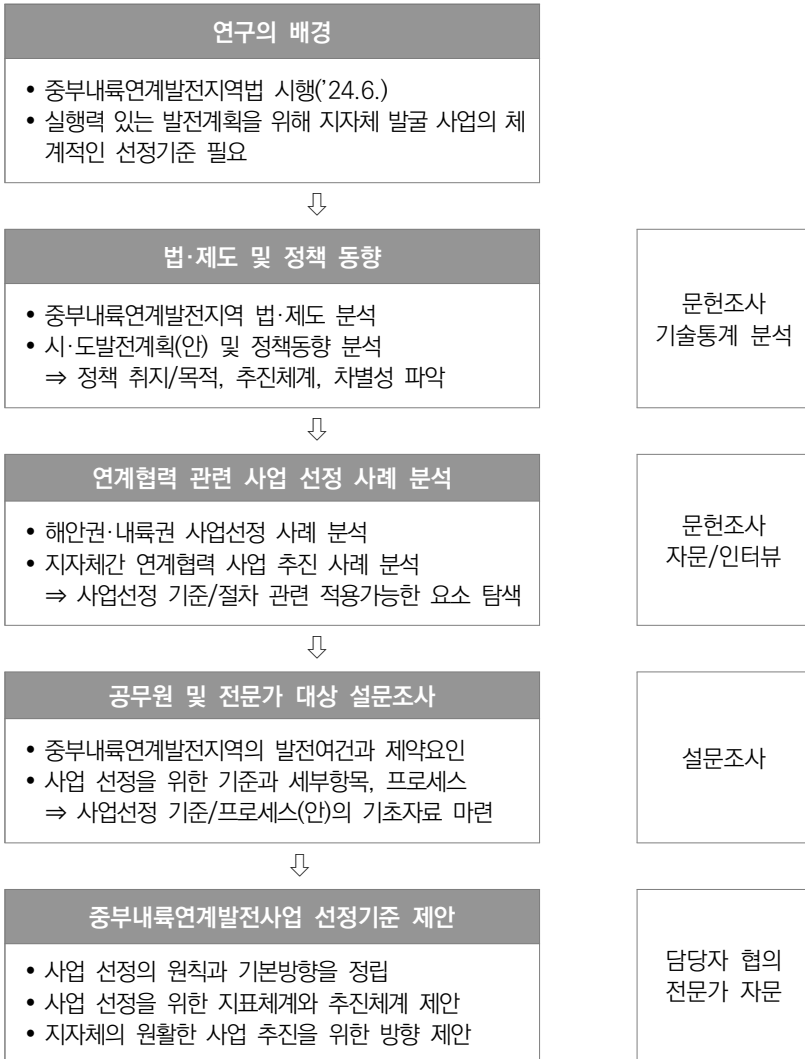
□ 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제정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행력을 갖춘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선정 기본 방향을 제안
 - 법·제도 및 정책 동향과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을 제안

□ 선정기준 및 추진체계 제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과 추진절차 및 체계, 세부적인 지표체계를 제안하여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행력을 갖춘 사업 선정 방안을 제안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담당자 및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체계를 제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선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제안함

| 그림 1-1 | 연구의 흐름



제 2 장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검토

제1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절 정책 동향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법률의 제정 목적과 구성

□ 제정 배경 및 목적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제약과 수계로 인한 단절로 개발이 낙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통합국토 연계협력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에 제정되었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1조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규제,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제정은 수자원 등 국가적 기여 및 규제에 대한 보상, 지형적 제약 및 공간적 단절로 인한 낙후성 해소, 지역 간 상호 연계발전 측면의 이점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의 지형적 제약과 수계에 따른 공간적 단절로 개발이 지체되어 왔고, 지역 간 상호 연계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법제처 홈페이지)

□ 법률의 구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총칙,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등, 지원 및 특례(제4장), 보칙 및 벌칙(제5장) 등 5장, 27개 조문으로 구성
 - 지원 및 특례사항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례가 포함

【표 2-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의 수립) •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 •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사업시행자) •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 제16조(준공검사 등)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및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 제22조(감독) • 제23조(청문) •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 제27조(과태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확인일: 2025.7.30.)

2. 법률상의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기타 관계부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주민 등으로 구성
 - 행안부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발전지구 지정, 부처 협의, 지방교부세 지원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의결의 역할 담당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지자체간 공동 개발사업 발굴을 포함한 중부내륙연계발전 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협의 기능을 담당
 - 시·도지사는 시도발전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수립·제출을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일 시군구 사업 승인/시행 담당
 - 기후에너지부, 산림청은 각각 자연환경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타 관계부처는 사업계획 등 각종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게 됨

표 2-2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의 추진체계

구분	역할	비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계획(안) 수립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해제 등 정책 총괄 	계획수립 및 지구 지정, 중앙관계기관 등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종합계획안, 발전지구 등 심의·의결 •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 변경 심의 	심의·의결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 발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 협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정책의 개발 •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시도지사 • 위원: 시·도의회위원장, 시도연구원장, 시도지사 위촉 8인
해당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발전계획안, 연도별 사업계획안 수립·제출 •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사업의 승인/시행 등 	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의견 제시 • 단일 시·군·구 시행 사업의 시행 승인/시행 	의견 제시 및 시군구 사업 시행 승인
기후에너지부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 수립·시행 •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연환경계획/산림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기타 관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지침, 계획안, 연도별 사업계획 협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협의 등 	계획수립/지구지정 협의
주민 및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발전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 	의견 제시

출처: 해당 법률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제2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계획의 개요와 구성

□ 계획의 목적과 특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법 제6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 발전종합계획은 중기계획(8년)이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음

표 2-3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수립주체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수립)
공간적 범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
계획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획: 중부내륙특별법에 의해 수립(법 제6조) • 중기계획: 8개년('32년법 유효기간) /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지역주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특화된 계획 • 전략계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계획

출처: 행정안전부(2024).

□ 계획의 주요내용

- 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은 크게 기본 방향, 연계·협력, 부문별 계획(관광·수자원 활용·SOC·산업), 균형성장,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됨
 - 발전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중장기 기본 시책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연계·협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계획의 부문은 크게 관광, 수자원, SOC(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산업(주력산업·농림수산업) 등으로 구성됨
- 균형성장 측면에서 백두대간 저발전지역¹⁾ 및 인구감소지역²⁾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부내륙연계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

표 2-4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내용

구분		내용
기본방향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연계·협력		3.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 문	관광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수자원 활용	5.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SOC	7.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산업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균형성장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사항		11.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 및 투자계획 12. 그 밖의 참고사항

출처: 행정안전부(2024)

1)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함)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함

2. 계획의 방향과 절차

□ 계획의 수립 방향

- 수립지침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현황 분석, 비전과 목표 연계, 적극적 연계협력, 지역특화, 실현 가능성, 투자 및 자원조달 계획을 포함
 -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현황 및 관련 계획,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 측면에서 적극적 연계협력, 지역특화, 실현 가능성 등이 포함됨

【표 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구분	내용
현황 분석 (현황/계획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계획을 검토해 해당 지역의 강점/약점, 기회요인, 특수성 도출 • 자연환경, 경제산업, 인구구조, 도로·철도·항공 등 SOC, 문화관광자원, 규제상황 •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 계획과의 연계성
비전과 목표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발전계획안 마련
적극적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계획안에 반영
지역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유한 자원, 지역의 전략 사업 등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 지역의 발전 방향에 맞춘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일정을 고려하고 조기 착수 가능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국고보조사업 외 민자추진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적극 반영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종합계획의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산출한 것

출처: 행정안전부(2024)

□ 수립 절차

- 발전종합계획은 행안부장관의 수립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한 중부내륙연계발전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수립
 - 시·도지사는 시·도발전계획안 작성 시 환경부의 자연환경계획과 산림청의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고, 시·군·구청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함
 - 행안부장관은 시·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이 확정

-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 시·군·구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연도별 사업계획은 1. 사업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 명세, 6. 사업 시행기간, 7. 사업의 효과, 8. 해당 시·군·구의 재정 현황이 포함
 -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안을 확정
 -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및 해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심의·의결

|그림 2-1|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2024)

□ 시·도 발전계획의 작성

- 시·도 발전계획안은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도발전계획안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기본 방향 등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규정
 - 시·도지사는 자연환경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관리대책(산림청)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6조 제4항)
 - 충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 용역,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의견 청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주민·관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

| 표 2-6 | 시·도 발전계획의 내용

구분	내용
수립 개요 및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범위 •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간 협의, 연구용역, 협의회 등의 경과
현황 및 의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황 분석(자연, 경제·산업, 인구구조, SOC, 문화·관광, 규제 등) •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검토 • SWOT 등 통·한 지역 발전의 시사점 도출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사업)
전략별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별, 지역별, 부처별 사업 규모와 추진과제에 대한 개요 •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된 기준 제시 • 사업별 필요성, 사업개요,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투자계획(안)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총괄(개수, 분야, 장소 등) • 연계협력사업의 개요, 내용, 기대효과, 역할배분, 투자계획 등 제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지정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개요 등 제시 • 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투자계획(안) 제시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계획(환경부)의 주요내용과 시도계획(안)상의 추진계획 • 산림관리대책(산림청)의 주요내용과 시도계획(안)상의 추진계획
향후 계획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추진계획 작성 • 재원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공청회 공청회 개최 결과, 기타참고자료 등

출처: 행정안전부(2024)

[그림 2-2] 시·도 발전계획안 작성시 사업조사 양식

1 [전략1] 00000

1) 추진사업명

필요성

○

개요

○

내용

○

기대효과

○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기투자	25년 이후	25년 이후					비고
			'25	'26	'27	'28	'29	
국비								
지방비								
기타(교육청 등)								
민자								
총계								

구분

1. 총괄

○

2. 연계협력사업명

개요

○

내용

○

기대효과

○

역할배분

○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기투자	25년 이후	25년 이후					비고
			'25	'26	'27	'28	'29	
국비								
지방비	시·도 1							
	시·도 2							
	시·도 3							
기타(교육청 등)								
민자								
총계								

내용

출처: 행정안전부(2024)

3.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1)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

계획의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이용과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자연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계획에는 자연환경 현황 및 전망, 기본방향, 자연생태 보전·관리·이용 및 내륙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등이 포함
 - 시·도지사는 시·도발전계획안 작성 및 연도별 사업계획안 수립 시 자연환경계획을 반영하여야 함(「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6조 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기초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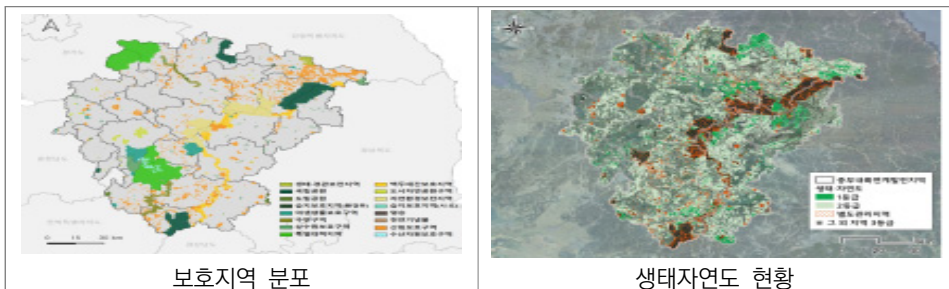
| 표 2-7 | 자연환경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②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 ③ 호소(湖沼)·하천·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 ④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자연환경 현황

- 자연환경계획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생태계의 핵심적인 연결 지역으로서 생태우수지역에 해당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213개소(3,629km²), 생태자연도 1등급 1,059.1km² 등 생태 우수지역에 위치함
 - 멸종위기종 105종을 포함하여 생물 7,082종이 서식·분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I 급은 23종, II 급은 82종에 달함(멸종위기종 37%)
 - 수자원과 관련하여 댐은 9개소, 저수지는 1,927개소에 달하며, 연간 용수 이용량은 24억m³(생활용수 10억, 공업 2억, 농업 12억)에 달함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500m³/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92개소, 하수 관로 보급률 86.6%, 공공폐수처리시설 54개소가 설치·운영

| 그림 2-3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자연환경 관련 현황



출처: 환경부(2025.)

| 표 2-8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보호지역 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km ²)	비고
계	213	6362.25	
자연공원			
국립공원	7	1,177.25	계룡산,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치악산, 덕유산
도립공원	4	24.31	고북저수지, 금오산, 대둔산, 문경새재
생태·경관보전지역	1	32.23	동강유역
백두대간보호지역	1	867.92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5	4.72	대전 갑천, 문경 돌리네, 상주 공검지, 충주 비내섬, 영월 한반도습지
시·도 지정	1	0.36	대청호 추동습지
야생생물보호구역	57	232.82	대전 대덕구 황호동, 충북 보은 속리산면 등
상수원보호구역	46	239.08	충주댐, 대청호, 풍기, 영월, 풍양, 갑천 등
수변구역	2	304.0	금강수계, 한강수계
특별대책구역	2	1,178.56	대청호, 팔당호
도시자연공원구역	1	61.96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1,482.5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2	19.6	괴산호, 대청호
명승	22	27.44	속리산 법주사 일원, 괴산 화양구곡 등
천연기념물	58	3.38	청주 공북리 음나무,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등
산림보호구역	3	706.11	경관·산림유전자원·수원함양 보호구역

출처: 환경부(2025)

□ 분야별 추진계획

- 자연환경계획은 크게 자연환경 보전·관리·이용, 수자원 활용,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에 관한 세부 계획을 제시
 - 자연환경 보전·관리·이용은 생태우수지역 확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지역 중심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증진에 관한 세부 전략을 포함
 - 수자원 활용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지자체 등 의견 청취가 포함되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수질오염방지·폐기물처리시설 정비·확충이 포함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불편 해소,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최소화,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과제가 포함

표 2-9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계획상의 분야별 계획

구분	전략	내용
자연환경 보전·관리· 이용	생태우수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 생태우수지역 관리체계 개선 • 훼손 생태계 복원 활성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보호 기반 강화 •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야생동물 피해 예방 • 야생동물 질병 감시체계 확대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 중심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 • 생태계서비스 증진 • 지자체 역량 강화 등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 활용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신규·대체 수자원 개발 • 비구조적 대책을 통한 응급 대응능력 강화
	지자체 등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활용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의견 청취
환경 기초시설 확충·정비	하수도/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설 개선·정비 • 신규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 광역화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현대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설치 규제 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가능시설 종류 확대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 구역 해제 • 수변구역 내 폐업한 업체도 영업 재개 허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거주민 임산물 채취 보장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종규제 해소

출처: 환경부(2025)

2) 산림관리대책

□ 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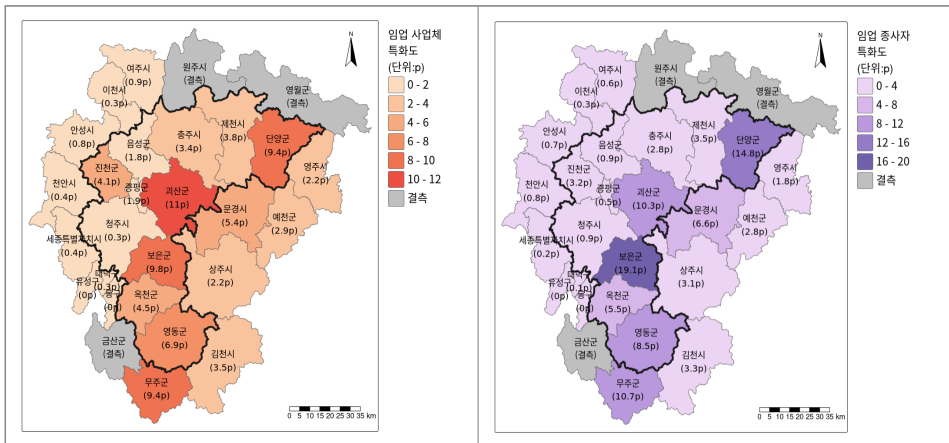
-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해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산림관리대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산림관리 가이드라인이자 최초의 초광역 단위 산림대책에 해당함
- 계획의 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림 현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산림은 백두대간이 관통하여 강원과 전북을 이어주는 것이 특징이며, 산림 총면적은 1,174 천ha 수준
 - 사유림이 66.7%, 국유림이 22.2%, 공유림이 11.1%를 차지하며, 국유림 비율은 영월(62.8%), 사유림 비율은 여주·천안(90.2%)이 가장 높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산촌 읍·면은 101개로 전체 산촌 읍·면의 22%를 차지하며, 거주인구는 총 33만 명(지역 인구의 21.3% 거주) 수준임
 - 지역 내 입업 사업체는 184개(전국 12.6%), 종사자는 1,596명(13.6%)을 차지하며, 특화도(LQ지수)는 1.6으로 특화 수준이 높은 편임

|그림 2-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입업 특화도 현황(좌: 사업체, 우: 종사자 기준)



출처: 산림청(2025)

표 2-10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보호지역 현황

구분	휴양림(44개소)	치유의숲(10개)	명품숲(18개소)	수목원(8개소)
대전	☉만인산	-	☉고봉산도시숲	-
	-	-	☉리기테다소나무숲	-
세종	☉금강	-	-	☉세종, ☉금강, ☉베어트리파크
경기	-	-	-	☉덕평공룡
	☉서운산	-	-	-
강원	-	-	-	☉황학산, ☉바이블랜드
	☉백운산, ☉치악산, ☉피노키오	-	-	☉동화마을
충북	☉망경대산	☉망경대산	☉함백산 하늘숲, ☉태화산 경관숲, ☉법흥사 소나무숲	-
	☉상당산성, ☉옥화, ☉동보원	-	-	☉미동산
충북	☉봉황, ☉계명산, ☉문성	☉계명산	☉오청산 소나무숲, ☉인등산 인재의 숲, ☉적보산 씨앗숲	-
	☉박달재, ☉옥전	☉제천	-	-
	☉속리산말티재, ☉충북 알프스, ☉숲체험휴양마을	-	☉충북알프스휴양, ☉속리산말티재숲	-
	☉장령산	☉장령산	-	-
	☉민주지산	☉민주지산	-	-
	☉좌구산	-	-	-
	☉생거진천, ☉천년의 동행	☉생거진천	-	-
	☉성불산, ☉조령산	☉성불산	-	-
	☉수례의산, ☉백야	-	☉원통산 자작나무숲	-
	☉황정산, ☉소선암, ☉소백산	☉소선암	☉죽령 옛길숲, ☉황정산 바위꽃숲, ☉소백산 천동계곡숲	-
☉태학산	☉태학산	-	-	
충남	☉금산, ☉남이, ☉진산, ☉서대산약용, ☉심천치유	-	-	-
전북	☉덕유산, ☉반디랜드, ☉향로산	-	☉덕유산독일가문비숲, ☉명천마을 소나무숲	-
	☉수도산	☉김천	☉단지봉숲	-
경북	-	-	☉마실치유숲	-
	☉성주봉	-	-	-
	☉대야산, ☉불정	-	-	-
	☉학가산우래	-	-	-

출처: 산림청(2025)

□ 분야별 추진계획

- 산림관리대책은 ‘숲과 함께,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를 비전으로 숲을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목표와 3대 방향을 제시
 - 5대 전략은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역량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산림벨트 조성, 국가대표 산림생태관광 확산, 지역 상생형 산림가치 창출로 구성되며, 12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그림 2-5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관리대책의 기본 방향

비 전	숲과 함께, 지역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목 표	숲을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방향① 탄소흡수·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로 건강한 지역
	방향② 목재, 먹거리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향③ 숲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추진전략	실천과제
(방향1)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	① 지역의 산림재난 통합관리역량 강화 ② 산림재난 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 추진
(방향1) 기후위기 대응역량 증진	① 도시기후 완화를 위한 기후대응숲 확대 ②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 경관축 복원
(방향2) 지속가능한 경제산림벨트 조성	① 경제림 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실현 ② 친환경 목재도시 조성 ③ 먹거리 임산물 No.1 클러스터 육성 ④ 산림 新비즈니스 창출
(방향 3) 국가대표 산림생태관광 확산	① 동서트레일 중부내륙 구간 활성화 ② 테마형 산림 관광인프라 조성
(방향 3) 지역 상생형 산림가치 창출	① 지역 중심 산촌공동체 활성화 ② 산림분야 행정관리체계 강화

출처: 산림청(2025)

- 산림관리대책상의 비전과 목표, 5대 추진전략 및 12개 실천과제에 해당하는 각각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중부권 산림재난 통합관리역량 강화의 경우 지역의 산림재난 통합관리역량 강화, 산림재난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 추진의 세부전략과 과제를 제시
 -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에는 도시기후 완화를 위한 녹색 네트워크 구축, 산림 경관축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의 세부전략과 과제 제시

【 표 2-11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관리대책 전략별 추진계획

구분	전략	내용
중부권 산림재난 통합관리역량 강화	지역의 산림재난 통합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대응 관리체계 강화 •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적합한 첨단대응 인프라 마련
	산림재난 유형별 맞춤 대응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산불 예방 위한 원인별 예방·신속대응체계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철저한 관리로 피해 예방 • 적극·전략적 방재로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	도시기후 완화를 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문제 해결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 도시숲 확대 •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도시 녹색연결성 강화 • ESG 연계 지역사회 도시숲 참여 확대 및 인식 증진
	산림경관축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복원 관리체계 구축 • 주요 훼손지 산림복원으로 산림 생물다양성 회복
지속가능한 경제 산림벨트 조성	경제림 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 '조성/육성'→'경영'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산림의 경제·사회·환경 기능 고려 나무심기/숲가꾸기
	친환경 목재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축·환경의 목재 전환으로 특색있는 도시 • 목재이용=탄소중립 인식 확산으로 목재문화 창달
	먹거리 임산물 No.1 클러스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임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규모화된 연계발전
	산림 新비즈니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산림 바이오산업 선도 • 농촌특화지구 등 제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국가대표 산림생태관광 확산	테마형 산림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제도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산림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동서트레일 중부내륙구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트레일 중심으로 중부내륙구간 복합 인프라 구축 • 농산촌 자원과 연계한 숲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형 산림가치 창출	지역 중심 산촌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찾고 싶은 산촌' 조성 • 지역 사회와 국유림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산림분야 행정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산림분야 사업 간 연계 강화 거버넌스 구축

출처: 산림청(2025)

제3절

정책 동향

1. 정책 추진 동향

- 2023년 12월 2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이 제정되면서 시도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진행되었음
 - 2024년 3월 시도연구원 설명회 이후 4월부터 시도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무원 등 실무단 회의가 진행되었고, 11월부터 사업 조정 회의가 진행
 - 2024년 3월부터 이해관계자 및 테마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와 포럼, 각종 학술대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 2024년 12월 24일 시도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고, 2025년 공청회 개최가 추진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24년 5월부터 환경부, 산림청, 시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자연환경계획, 산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음
 - 2024년 산림청 산림정책과와 충북도 관계관이 참여하는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자연환경계획, 산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진행
- 2024년 10월 24일에는 8개 시·도지사와 관계관, 협의회원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협의회가 출범하였음

| 그림 2-6 | 공무원 설명회 및 중부내륙 발전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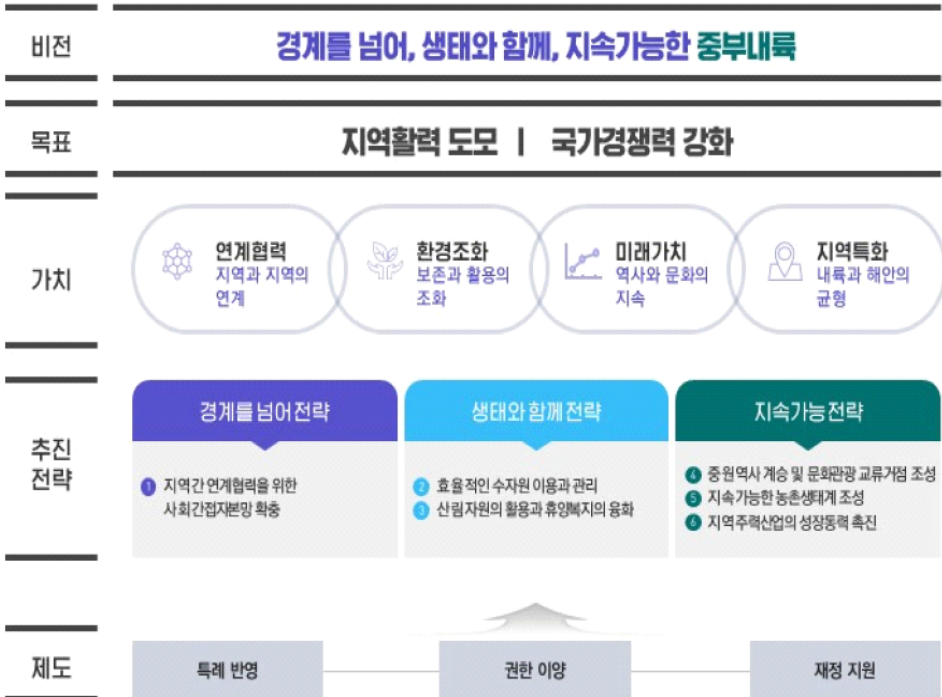
출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발전계획안(공청회 자료)

2. 시도 발전계획(안)

1) 기본방향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발전계획(안)의 비전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며, 목표는 지역활력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
 - 가치는 연계협력, 환경조화, 미래가치, 지역특화로 구성되며, 추진전략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 등 3개 전략으로 구성됨
 - 전략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경계를 넘어 전략은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생태와 함께 전략은 수자원 및 산림자원의 이용 및 활용, 지속가능 전략은 문화관광, 농촌생태계 및 주력산업과 관련되어 있음

| 그림 2-7 |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 체계도(안)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2) 발굴된 사업 현황

□ 사업 수 및 사업비 구성

- 전략별 사업 수는 생태와 함께 전략이 88개(40.9%), 지속가능 전략이 73개(34.0%), 경계를 넘어 전략이 54개(25.1%)를 차지함
 - 산림자원 54개(25.1%), 문화관광 35개(16.3%), 수자원 34개(15.8%)
- 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계를 넘어 전략이 91조 원(90.6%), 지속가능 전략이 5조 원(4.8%), 생태와 함께 전략이 5조 원(4.7%)을 차지함

【표 2-1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

(단위: 개, %, 조원)

구분	사업수		사업비 구성			
	사업수	비중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경계를 넘어 (비중)	54	25.1	91.43 (90.6)	86.02	2.06	3.35
공항	1	0.5	1.50	1.50	0.00	0.00
도로	20	9.3	22.21	18.98	0.00	3.23
사회서비스	6	2.8	0.37	0.19	0.13	0.06
철도	27	12.6	67.34	65.35	1.93	0.06
생태와 함께 (비중)	88	40.9	4.72 (4.7)	2.23	1.00	1.49
산림자원	54	25.1	2.35	1.42	0.49	0.44
수자원	34	15.8	2.37	0.81	0.51	1.05
지속가능 (비중)	73	34.0	4.81 (4.8)	1.83	1.73	1.25
농촌생태계	20	9.3	0.82	0.48	0.32	0.02
문화관광	35	16.3	1.51	0.67	0.51	0.33
성장동력	18	8.4	2.49	0.68	0.90	0.90
총합계 (비중)	215	100.0	100.95 (100.0)	90.07 (89.2)	4.78 (4.7)	6.10 (6.0)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 사업 규모

- 사업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백~3백억 사업이 64개(29.8%), 1백억 미만 사업이 45개(20.9%), 1천~1조원 사업이 39개(18.1%)를 차지
 - 경계를 넘어 전략은 1조원 이상의 사업이 27개(50.0%)로 가장 많고, 생태와 함께 전략은 100억~300억 미만 사업이 34개(38.6%)로 가장 많음
 - 지속가능 전략의 경우에는 100억~300억 사업이 28개(38.4%)로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사업비 기준)

(단위: 개, %)

구분	100억원 미만	100억~300억 미만	300억~500억 미만	500억~1천억 미만	1천억~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합계
경계를 넘어 (비중)	4 (7.4)	2 (3.7)	4 (7.4)	5 (9.3)	12 (22.2)	27 (50.0)	54 (100.0)
공항						1	1
도로	4			1	8	7	20
사회서비스		2	1	2	1		6
철도			3	2	3	19	27
생태와 함께 (비중)	27 (30.7)	34 (38.6)	5 (5.7)	6 (6.8)	16 (18.2)	(0.0)	88 (100.0)
산림자원	17	20	5	4	8		54
수자원	10	14		2	8		34
지속가능 (비중)	14 (19.2)	28 (38.4)	11 (15.1)	9 (12.3)	11 (15.1)	(0.0)	73 (100.0)
농촌생태계	6	5	5	2	2		20
문화관광	7	14	4	5	5		35
성장동력	1	9	2	2	4		18
총합계 (비중)	45 (20.9)	64 (29.8)	20 (9.3)	20 (9.3)	39 (18.1)	27 (12.6)	215 (100.0)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 기투자사업 현황

- 사업 수를 기준으로 기투자 사업은 70개(32.6%), 신규 투자 사업은 145개(67.4%)이며, 사업비 기준 기투자액은 2.03조 원(2.0%) 수준임
 - 경계를 넘어 전략에서 기투자 사업은 사업 수 기준 11개(20.4%), 사업비 기준 1.9조(1.9%)이며, 철도의 경우 신규 투자 사업 25개, 67.3조 원에 달함
 - 생태와 함께 전략에서 기투자 사업은 36개(40.9%), 0.2조 원(3.8%)이며, 지속가능 전략에서 기투자 사업은 23개(31.5%), 0.09조 원(1.8%) 수준임

【 표 2-14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추진전략별 현황(기투자여부 기준)

(단위: 개, 조원, %)

구분	사업수 기준			사업비 기준		
	기투자	신규투자	합계	기투자액	신규투자액	합계
경계를 넘어 (비중)	11 (20.4)	43 (79.6)	54 (100.0)	1.76 (1.9)	89.66 (98.1)	91.43 (100.0)
공항		1	1	0.00	1.50	1.50
도로	7	13	20	1.73	20.49	22.21
사회서비스	2	4	6	0.02	0.35	0.37
철도	2	25	27	0.02	67.32	67.34
생태와 함께 (비중)	36 (40.9)	52 (59.1)	88 (100.0)	0.2 (3.8)	4.5 (96.2)	4.7 (100.0)
산림자원	20	34	54	0.14	2.21	2.35
수자원	16	18	34	0.04	2.33	2.37
지속가능 (비중)	23 (31.5)	50 (68.5)	73 (100.0)	0.09 (1.8)	4.72 (98.2)	4.81 (100.0)
농촌생태계	6	14	20	0.02	0.80	0.82
문화관광	13	22	35	0.05	1.46	1.51
성장동력	4	14	18	0.02	2.46	2.49
총합계 (비중)	70 (32.6)	145 (67.4)	215 (100.0)	2.03 (2.0)	98.92 (98.0)	100.95 (100.0)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 지역별 현황(광역 기준)

- 지역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수를 기준으로 충북 111개(51.6%), 경북 44개(20.5%), 초광역 40개(18.6%) 순서를 나타냄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광역 사업이 74.4조(73.7%)로 가장 많고, 충북 13.7조(13.5%), 경북 7.3조(7.2%) 순서를 나타냄

【표 2-15】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별 현황(광역 기준)

(단위: 개, %, 조원)

구분	사업수		사업비 구성				
	사업수	비중	총사업비 (비중)		국비	지방비	기타
경기	3	1.4	3.49	(3.5)	2.75	0.00	0.74
경북	44	20.5	7.28	(7.2)	5.12	1.62	0.55
대전	1	0.5	0.04	(0.0)	0.01	0.03	0.00
전북	9	4.2	0.15	(0.1)	0.06	0.08	0.00
충남	7	3.3	1.93	(1.9)	1.63	0.19	0.10
충북	111	51.6	13.65	(13.5)	8.06	0.89	4.70
초광역	40	18.6	74.40	(73.7)	72.44	1.97	0.00
총합계	215	100.0	100.95	(100.0)	90.07	4.78	6.10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 지역별 현황(기초 기준)

- 경북의 경우 사업 수 기준 기초간 연계 16개(7.4%), 상주 10개(4.7%), 영주·예천 각 7개(3.3%) 순서를 보이며, 사업비 기준으로 기초 연계 4.5조 원, 상주 1.2조 원(0.5%), 김천 0.6조 원(0.3%) 순서를 나타냄
- 충남의 경우 사업 수를 기준으로 금산이 3개(1.4%)로 가장 많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기초연계 사업이 1.3조 원(0.6%)이 가장 많음
- 충북은 사업 수 기준 충주 28개(13.0%) 제천 23개(10.7%), 기초 연계 17개(7.9%) 순서를 보이며, 사업비를 기준으로 기초연계 10.5조(4.9%), 충주 1.4조(0.7%), 제천 1.0조(0.5%) 순서를 나타냄

【 표 2-16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별 현황(기초 기준)

(단위: 개, %, 조원)

구분		사업수 기준		사업비 기준	
		사업수	비중	총사업비	비중
경기	기초연계	3	1.4	3.49	1.6
경북	기초연계	16	7.4	4.50	2.1
	김천	2	0.9	0.62	0.3
	문경	2	0.9	0.09	0.0
	상주	10	4.7	1.17	0.5
	영주	7	3.3	0.54	0.3
	예천	7	3.3	0.37	0.2
	동구	1	0.5	0.04	0.0
	전북	무주	9	4.2	0.15
초광역	초광역연계	40	18.6	74.40	34.6
충남	기초연계	2	0.9	1.30	0.6
	금산	3	1.4	0.51	0.2
	천안	2	0.9	0.12	0.1
충북	기초연계	17	7.9	10.46	4.9
	괴산	4	1.9	0.04	0.0
	단양	5	2.3	0.03	0.0
	보은	5	2.3	0.39	0.2
	영동	1	0.5	0.02	0.0
	옥천	4	1.9	0.06	0.0
	음성	12	5.6	0.11	0.1
	제천	23	10.7	1.00	0.5
	증평	3	1.4	0.02	0.0
	진천	3	1.4	0.03	0.0
	청주	6	2.8	0.08	0.0
	충주	28	13.0	1.42	0.7
	총합계		215	100.0	100.95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 전략 및 지역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계를 넘어 전략의 경우 초광역(51.9%), 충북(27.8%), 경기·충남(각 3.7%) 순서를 나타냄
 - 도로의 경우 초광역 9개, 충북 7개, 경북 2개 순서를 나타내며, 철도의 경우 초광역 19, 경북/충북 각 3개 순서를 나타냄
- 생태와 함께 전략은 충북(65.9%), 경북(21.6%), 초광역(5.7%), 지속가능 전략은 충북(52.1%), 경북(26.0%), 초광역(9.6%) 순서로 사업 수가 많음
 - 세부 전략의 경우 충북의 사업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전략 및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조원)

구분	초광역	경기	경북	대전	전북	충남	충북	합계
경계를 넘어 (비중)	28 (51.9)	2 (3.7)	6 (11.1)	(0.0)	1 (1.9)	2 (3.7)	15 (27.8)	54 (100.0)
공항							1	1
도로	9	1	2			1	7	20
사회서비스			1		1		4	6
철도	19	1	3			1	3	27
생태와 함께 (비중)	5 (5.7)	(0.0)	19 (21.6)	(0.0)	4 (4.5)	2 (2.3)	58 (65.9)	88 (100.0)
산림자원	2		15		1		36	54
수자원	3		4		3	2	22	34
지속가능 (비중)	7 (9.6)	1 (1.4)	19 (26.0)	1 (1.4)	4 (5.5)	3 (4.1)	38 (52.1)	73 (100.0)
농촌생태계			7		2		11	20
문화관광	2		8	1	2	3	19	35
성장동력	5	1	4				8	18
합계 (비중)	40 (18.6)	3 (1.4)	44 (20.5)	1 (0.5)	9 (4.2)	7 (3.3)	111 (51.6)	215 (100.0)

주: 2025년 1월 공청회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도발전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외(202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 기준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법의 제정 목적의 특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지역간 연계·협력과 백두대간과 수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규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률의 제정은 수자원 등 국가적 기여와 규제에 대한 보상, 지형적 제약 및 공간적 단절로 인한 낙후성 해소, 지역 간 상호 연계발전 측면의 이점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음

□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선정 기준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이 공유하는 자원과 공간적 연계를 토대로 하는 협력 사업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선정 기준 또한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에 기반하여 시·도간 연계·협력, 지속 가능발전 등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제안되어 검토 및 선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도발전계획안과 발전종합계획이 단순히 지자체에서 발굴된 지역개발 사업이 형식적으로 통합되기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을 갖춘 전략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시·도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필요

□ 단순한 법률상의 목적이나 취지만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구현하기에 한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은 충북을 중심으로 인근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은 단순히 법률의 선언적 목적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움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은 본질적으로 참여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역할 분담, 재정 참여 등 구체적인 합의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하며, 상호 신뢰가 부족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움
 - 즉, 연계협력사업은 정책적 취지나 평가 기준만으로 구현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실행구조와 메커니즘이 병행되어야 함

□ 지자체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해서 연계·협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함과 동시에 지자체간 상호 신뢰에 근거한 연계·협력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서 연계·협력의 범위(행정, 재정, 지리, 기능)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협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3. 지자체 발굴사업의 합리적 검토·조정을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마련

□ 시·도발전계획안에 근거한 상향식의 추진체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시도에서 수립한 시·도발전계획안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상향식의 추진체계를 지니고 있음
 - 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기반임

- 하지만 지자체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기에 한계
 - 지자체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취지, 실행가능성, 중복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부재하여, 계획 단계에서의 체계적 선별 및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검토·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필요**

- 지자체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 정합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체 검토 항목과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제안 단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복성 검토, 사업 선별 또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사례

제3절 지역발전위원회의 연계협력사업
선정 사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과 분석 틀

□ 사례 분석 목적

- 본 장은 행정구역을 넘어 수립되는 지역발전 정책 사례의 사업 선정 특성을 분석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기준이나 항목 또는 절차적 요소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균형발전, 연계협력 측면에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틀

- 사례 분석은 크게 해당 정책의 개요, 사업의 선정기준, 절차 및 추진체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정책 개요는 사례 정책의 법적 근거와 목적, 취지, 계획상의 기본 방향과 원칙, 추진전략과 주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도출함
 - 사업 선정 기준은 사례 정책상의 사업 선정 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중요도, 평가를 위한 사업유형 등의 구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 선정 기준으로 고려가 필요한 항목을 고찰함
 - 절차 및 추진체계의 경우 사업기준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별 특성, 추진체계 등을 고찰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표 3-1 | 사례분석 틀

구분	정책 개요	선정 기준	추진체계 및 절차
목적	사례 정책의 목적과 취지, 주요내용에 대한 파악	사례 정책상의 사업기준 또는 평가항목에 대한 고찰	사업선정 절차(프로세스) 및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와 취지 • 정책 기본방향과 원칙 • 추진전략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구성 • 사업유형 구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 절차/단계 • 사업선정 추진체계 • 사업 선정 규모 등
비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의 유사성·차별성 검토	평가항목의 구성과 항목별 중요도 검토	사업 선정 단계별 흐름과 주체별 역할 검토

2. 사례 선정

□ 사례 선정 시 고려사항

- 사례 선정을 위하여 목적 부합성, 연계·협력 및 공간적 범위, 지역 주도성, 분석 가능성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음
 - 목적 부합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이 지역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선정
 - 연계·협력 및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는 해당 정책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에 의해 추진된 정책을 선정
 - 지역 주도성 측면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되는 정책을 선정
 - 분석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선정 기준과 절차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정책 추진이 일정기간 경과하여 평가 및 검토가 가능한 정책을 선정

| 표 3-2 | 사례 선정 기준

구분	내용
목적 부합성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일 것
연계·협력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연계·협력 사업일 것
지역 주도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제안, 발굴 기획의 주체에 해당할 것
분석 가능성	정책 추진시기, 자료 확보 측면에서 분석 가능한 사례일 것

□ 사례 선정 결과

- 사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사례로 선정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은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6개 해안권, 내륙권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연계·협력성, 지역 주도성, 분석 가능성 측면에서 사례 분석에 적합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선정은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사업으로서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과 절차 측면에서 고려요소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함

【표 3-3】 사례 선정 결과

구분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법적 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추진 시기	2007년 ~	2013년
추진 주체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부합성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법을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한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 광역행정수요 대처, 지자체별 중복투자, 소모적인 경쟁해소 및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동반발전
연계·협력성	6개 초광역권(해안권 3, 내륙권 3)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지자체 역할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 (광역시·도)	사업발굴 및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기초자치단체)
분석 가능성	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1차 계획이 마무리되고 2차 계획이 추진 중이며,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분석 가능성 큼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사례로서 추진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분석 가능성 큼

자료: 관련 법률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참고하여 작성

제2절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사례

1. 정책 개요

□ 목적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은 해안권과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발전전략 부재, 규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의 한계를 보이는 해안권, 내륙권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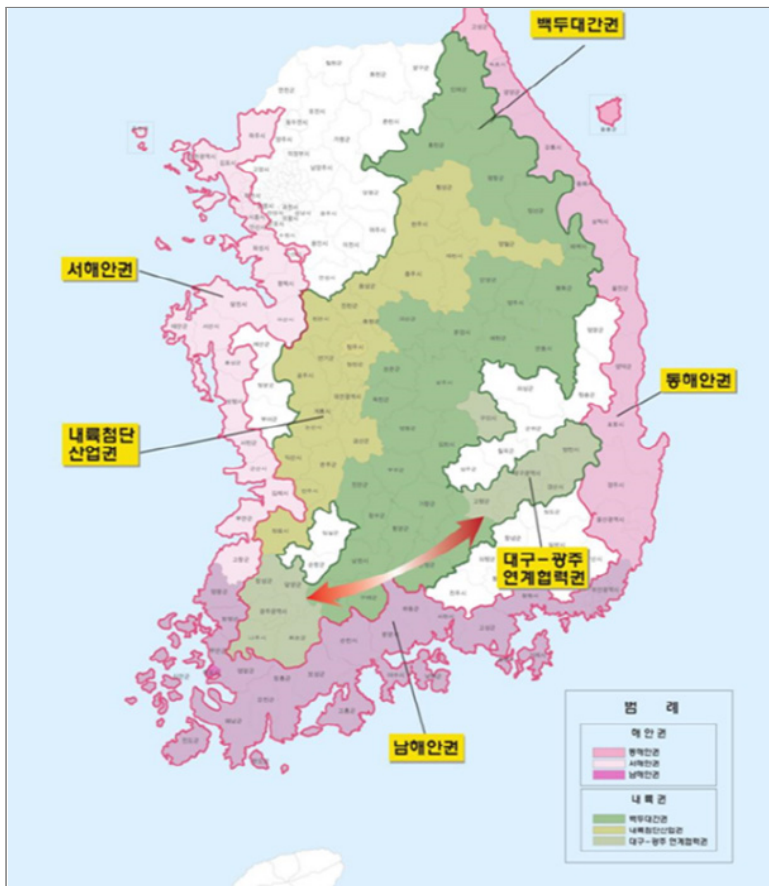
□ 발전계획의 수립

- 「해안내륙발전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함
 - 종합계획의 입안은 시·도지사가 해당 발전종합계획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수렴(필요시 공청회 개최)하여 이루어짐
 - 종합계획의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획은 고시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 통보를 통해 공표됨
 -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 요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법 제7조)
 - 개발계획은 공익성, 지속가능성, 지역특성 부합성,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등 요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또는 변경
- 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 지역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0년~2021년 변경 계획이 수립
 - 「해안내륙발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6개 초광역권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님

- 2018년 12월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새롭게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음³⁾
- 변경은 지자체 입안(권역별 발전공동협의회 심의) → 관계부처 협의 → 국토계획평가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의 순서로 진행

| 그림 3-1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조합계획의 권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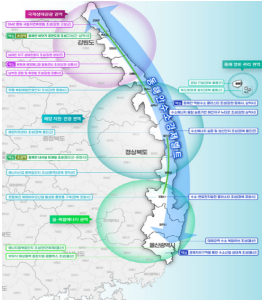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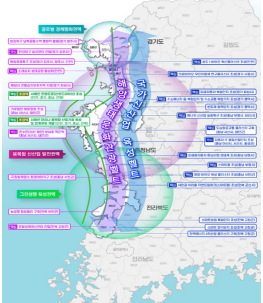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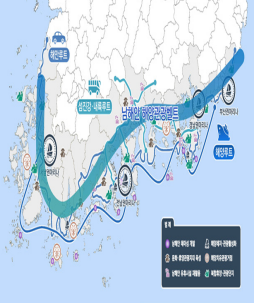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17.)

- 3) 유효기간 연장의 배경에는 해안권 및 내륙권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임(국가법령정보센터)

□ 계획별 기본방향

○ 6개 초광역권별로 각각의 공간적 범위, 방향, 추진전략, 핵심사업을 제시

【표 3-4】 발전종합계획별 주요내용(해안권)

구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범위	울산(4)·강원(6)·경북(5) 15개 시군구	인천(8)·경기(6)·충남(7)· 전북(4) 등 25개 시군구	부산(10)·전남(16)· 경남(7) 등33개 시군구
비전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방향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의 新성장 동력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서해안권을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광역 경제벨트조성을 통한 연계협력지대 구축, 해양신산업 중심의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전략	①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 해양관광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해양·바이오 신산업 기반 구축 등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지역거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①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 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 발전협력 체계 구축 ⑤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①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 관광벨트 형성 ②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③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④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사업	83개 사업(핵심사업 7건)	106개 사업(핵심사업 26건)	96개 사업(핵심 19건)
핵심 사업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강릉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조성 등	시흥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 서산·태안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통영 폐조선소 재생, 해상영웅벨트 조성, 부산 센트럴베이 기반 조성 등
비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18.)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30.) 참고하여 작성

【 표 3-5 】 발전종합계획별 주요내용(내륙권)

구분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범위	강원(5)·충북(5)·전북(4)·전남(2)·경북(7)·경남(4) 등 27개 시군구	대전(5)·세종·강원(3)·충북(6)·충남(6)·전북(4) 등 25개 시군구	대구(8)·광주(5)·전남(4)·경북(4) 등21개 시군구
비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
방향	권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되, 융복합 新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조성	첨단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및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형 新산업 생태계 구축	동서화합 중심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되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성장산업 기반 강화
추진 전략	① 임업 산업의 융복합 등 “지역 산업고도화 및 산산(山)업 창출” ② 백두대간 고유자원의 관광 콘텐트화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등 생태 명소화를 위한 “고유성 확보 및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조성” ③ 생태자원보전·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축” ④ 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조성”	① 모빌리티 산업혁신 기반 조성 과 ICT 신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바이오·복합의료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등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④ 연계협력 및 교류확대를 위한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① 동서 연계 관광명소화 등 “문화·관광·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연계” ②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 등 “첨단 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일자리 창출 중심 주력산업 육성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대구·광주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사업 구성	155개 사업(핵심사업 30건)	146개 사업(핵심사업 11건)	87개 사업(핵심사업 19건)
핵심 사업	태백 웰니스 향노화 체험단지, 태백 세라믹 융복합 소재산업 클러스터, 봉화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구례 에코힐링타운 조성 등	원주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충주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대전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등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대구·광주), 전국관광광합성 센터 조성(대구·광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대구·광주) 등
비고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18.)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내륙첨단산업권 25개 시군구를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
- 핵심 공간구상으로는 강원과 충북의 관광자원 및 의료시설을 활용한 생태 힐링관광권역, 대전과 충남, 세종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권역,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혁신 인프라 기반의 미래신산업혁신벨트를 제시
 - 첨단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ICT 응용단지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
 - 핵심사업으로는 원주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충주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포함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의 일부 시·군·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첩
 - 충북 권역 지자체의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충주, 세종, 원주 등은 전기차·수소 모빌리티·로봇 기반 신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교통·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월, 충주, 대전은 관광도로, 치유힐링 공간, 하천 그린뉴딜 등 환경·관광 인프라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어, 산업과 관광·환경을 혼합적으로 추진

【표 3-6】 중부내륙연계 권역과 중복되는 내륙첨단산업권 핵심사업

구분	중복 지자체		지자체별 핵심사업
내륙 첨단 산업권	강원	원주, 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첨단산업권 관광도로 조성(원주, 영월) •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 기반 구축(원주)
	충북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충주) • 심향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충주)
	충남	천안,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 없음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사업(대전) • 지능형 로봇기반의 정밀/ACE 공정혁신 TB 실증 지원(대전)
	세종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전기차 랜드마크 조성 사업

출처: 해당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며, 광범위한 산림·생태축을 보전하면서 관광·웰니스 산업과 임업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공간구상으로는 충북과 경북의 자연 및 문화유산 관광을 활용한 거점과 전북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거점을 제시
- 핵심사업으로는 태백 웰니스 향노화 체험단지, 봉화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등 산림자원을 기반으로한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7】 중부내륙연계 권역과 중복되는 백두대간권 핵심사업

구분	중복 지자체		지자체별 핵심사업
백두대간권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휴양치유관광벨트 조성(괴산, 보은, 옥천, 영동) • 백두대간 순환관광도로 조성(괴산, 보은, 옥천, 영동) •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단양) • 청정과일나라 영동포도 박물관 및 체험장 건립(영동) • 옥천상징 금강유역 출렁다리(옥천)
	경북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부항댐 체류형 관광지 조성(김천) • 백두대간권 산림과학 거점 구축(영주) • 백두대간 파워스팟 권역개발 사업(예천) •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김천,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전북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에서 즐기는 여행체험 명소 '라제'(무주군)

출처: 해당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과 공간적·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
 - 충북과 경북, 전북 등 일부 지자체가 모두 두 계획 권역에 중복되며, 두 계획 모두 관광,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함
- 백두대간권 계획은 주로 지역의 산림·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복 권역 지자체의 핵심사업 대부분은 휴양·체험·관광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주류를 이룸

표 3-8 | 백두대간권 및 내륙첨단산업권의 공간구상 및 방향

구분	지자체	공간구상	주요 방향
백두대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경북: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예천 • 전북: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중부: 충북, 경북 • 백두대간 남부: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중부: 자연·문화유산 관광 거점 • 백두대간 남부: 체험형 생태관광 거점
내륙첨단산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원주, 영월 • 충북: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 충남: 천안, 금산 •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힐링관광권역: 강원, 충북 북부 • 역사문화관광권역: 대전, 충남, 세종 • 미래신산업혁신벨트: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힐링관광권: 관광자원 기반 치유·휴양중심 의료·웰니스 관광클러스터 • 역사문화관광권: 백제, 기호유교, 종원 등 역사문화자원 기반 동북아 신(新)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 미래신산업혁신벨트: 첨단산업 인프라 기반 신산업혁신벨트

출처: 해당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 선정 개요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사업의 선정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권역별 유사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남해안권은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선정 체계와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 선정 프로세스는 정책부합성-입지적합성-추진가능성의 3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진행되며 기존의 종합계획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항목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함

□ 원칙 및 방향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는 급변하는 지역여건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종합계획으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사업 선정 시 고려해야할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존 관광 및 산업거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산업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검토
-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균형 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를 검토
- 지자체 추진의사가 명확한 사업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 국정과제, 지자체 발전계획 등의 목적과의 부합성을 검토
-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등 해안권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와 연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

□ 선정 프로세스 및 단계별 특성

- 2010년 5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제시하였던 개발사업의 총 선정은 6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
 - 1단계는 초광역개발권의 취지, 지역상생과 대외개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함
 - 국고지원 가능사업, 국가계획 반영 사업, 시행주체가 국가인 사업 등
 - 2단계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등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춘 사업 발굴 및 선정
 - 3단계는 5개 추진전략과 부문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 4단계는 사업간 융·복합화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간 융·복합화가 가능하여 초광역개발권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선정
 - 시군 단위의 공간적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사업
 - 5단계는 타당성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전문가에 의해 타당성을 평가함
 - 정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성 평가지표와 같이 일부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 계량화된 자료를 평가 보조지표로 활용
 - 6단계는 앞선 5단계를 거쳐 제시된 개발사업(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업별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 표 3-9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선정단계(2010년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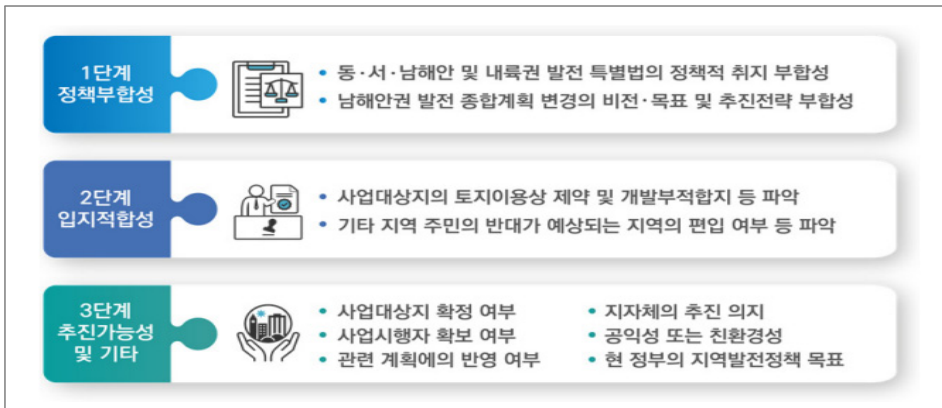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 초광역개발권의 비전 및 발전방향을 고려한 일반원칙을 적용
2단계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기본방향 고려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의 고려
3단계	• 부문별 사업특성 및 5개 전략 내용 감안
4단계	• 사업간 융복합화 및 연계성 등을 고려
5단계	• 개략적 B/C 분석에 의한 부문별 개발사업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고려(타당성 평가)
6단계	• 3개 시도 및 지자체 의견수렴, 동서남해안권 기획단 및 관련부처 협의 결과 반영

참고. 국토해양부(2010)

○ 제2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변화하였음

- 1단계 정책부합성 측면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정책 취지, 각 발전종합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2단계 입지적합성에서는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제약 및 개발부적합지 여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의 편입 여부 등을 고려
- 3단계 추진가능성 및 기타 측면에서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 확보, 관련 계획 반영 여부,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의 공익성 또는 친환경성 등 평가

【 그림 3-2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선정단계



참고: 국토교통부 외(2020)

□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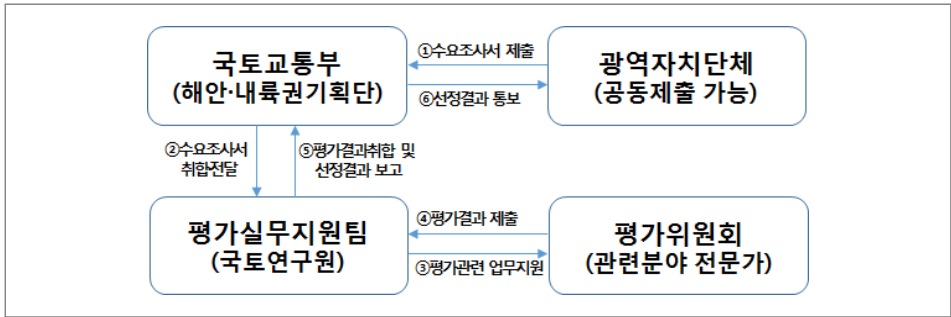
- 지역간 연계 및 통합브랜딩, 주체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형 모델로서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을 추진
 - 지자체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바탕으로 권역의 여건, 발전거점 구축계획, 실행체계, 추진역량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되었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 구성된 해안권·내륙권 발전기획단(현재 폐지)가 사업 선정 절차를 총괄

[표 3-10] 해안권·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평가주체		8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지역발전(2), 산업(1), 관광(2), 도시/도시재생(2), 인프라(1)로 구성)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요조사 제출(광역자치단체→국토부) • 수요조사서 취합·전달(국토부→실무지원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수행 • 평가결과 제출(평가위원회→실무지원팀) • 결과취합/선정결과 보고(실무지원팀→국토부) • 선정결과 통보(국토부→광역자치단체)
평가 기준	권역여건(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역자원 현황(15): 지역자원 잠재력, 활용가능성 • 권역 내 주요 지역개발사업(15): 사업수요 및 향후 창출가능성, 특화산업/문화자산 연계실적 • 민간투자여건(5): 민자유치 성공 실적(규모 등), 제약요인 해소가능성
	발전거점 구축계획(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설정 적절성(10):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등 합리성, 교통네트워크 연결성 • 목표 및 전략(10): 해안권→내륙권 발전거점으로서 목표 및 전략의 합리성 • 공간배치/연계구상(15): 공간구상 적절성/창의성, 콘텐츠 연계성, 기반시설 연계 적정성
	지자체 실행체계 및 추진역량(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연계협력실적(10): 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성현황, 연계협력 추진 실적 • 연계협력 추진계획(15) 광역지자체 지원·협력계획, 시군협력체계 구체성 • 민간투자유치환경 개선계획: 민자유치 환경개선 계획구상 실현가능성

출처: 국토연구원(2017)

| 그림 3-3 |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선정 프로세스



출처: 국토연구원(2017)

3. 사업 선정기준 또는 항목

□ 스크리닝 기준(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기준)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살펴보면,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적 검토, 관련계획 및 지역전략 사업 반영, 평가항목에 의한 검토를 통해 계획에 포함될 사업에 대한 스크리닝을 진행
- 기존사업의 경우 이전 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10.5월)과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14.7월)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우선 검토
 - 여건 변화를 고려한 종합검토를 통해 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추진 가능성 등이 낮은 사업은 제외하며,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을 보완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 동·서·남해안 전체에서 남해안권의 역할과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여 기존계획(166개)에서 현실적인 한계와 계획의 실효성, 종합 계획으로서의 가치, 추진가능성 확보 사업위주로 계획내용을 변경·조정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계획에 포함되었거나 대통령 또는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지역전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
 -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13.10),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17.10), 대통령('17.7) 및 도지사('18.5) 공약사항에

- 포함된 전략사업 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
- 평가항목에 대한 반영 측면에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14.7월)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단계를 재설정한 후 남해안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

□ 적절성 평가 기준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14.7월)에서는 개발사업, 기반시설, 공통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세부적인 사업 평가 항목을 제시

【표 3-11】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의 개발사업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개발 사업	정책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내륙발전법의 정책적 취지 및 목적에의 부합성 • 해안내륙발전법에서 정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의 부합여부 등 	
	입지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 상 제약 및 개발 부적합지 편입여부 등 	
	추진 가능성	사업대상지 확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위치, 규모 등 확정여부 등
		사업시행자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사업시행예정지와 협의 중 여부 등
		관련계획에의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및 타 부처 소관 계획에의 반영여부 • 관련계획에 의한 기투자 실적 등
기반 시설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사업과의 연계성 및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도 • 유사 기반시설의 인접으로 인한 기능 중복성 • 주민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등 	
	관련계획에의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및 타 부처 소관 계획에의 반영여부 • 관련계획에 의한 기투자 실적 등 	
공통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추진의지(지역내 관심, 지방비 부담 및 조달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공익성 또는 친환경성 • 지역 고유자원의 활용 증진, 기존 및 타 사업 등과의 연계효과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목표(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기조 등 	

참고: 국토교통부(2014)

제3절

지역발전위원회의 연계협력사업 선정 사례

1. 정책 개요

□ 배경 및 목적

-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대한 연계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
 - 해당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연계협력전략을 강조
 - 당시 구.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였음
- 2013년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분담과 효과를 공유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
 - 추진 배경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로 단일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 증대에 있음
 - 특히,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각각에 대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우선순위, 사업 규모 측면에서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발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과 2개 이상의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당 총사업비는 국고 지원 기준 60억 이내로 한정하였음
 - 국고 80%, 지방비 20%의 매칭펀드로 지원되며, 재정자주도 평균 이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가 90%까지 지원 가능

-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업을 포괄하며, 중복성 및 국고보조금 지급에 부적절한 사업은 제외됨
 - 사업의 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 문화, 관광, 보건,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SW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이때, 타 부처 또는 회계에 의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불가한 사업, 지방 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표 3-12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중심 • 지원대상, 지원분야에 있어 광역연계협력사업과 차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제고하고 업무·재정적 부담은 완화 	
사업 대상	2 이상의 기초지자체간, 2이상의 기초·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기초, 기초-광역 가능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가능 • HW사업 가능하나, 기존 시설 활용 SW사업 우선 	지역특화,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제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연계협력사업 분야(R&D, 기업지원) • 균특법 시행령 별표 2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사업 •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 	중복성과 지자체 보조사업 부적합성 고려
사업기간 및 규모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 사업당 국비 최대 60억 이내(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재정자주도 평균 이하 국비 90% 지원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운영의 주체로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는 예산집행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분야, 지원방식, 사업선정기준, 추진절차 등을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등 실질적인 총괄 운영의 역할 담당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주관부처로서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배분, 결산 등을 담당하게 됨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안된 과제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며, 시·군·구는 사업의 실질적인 발굴과 사업예산 집행의 역할을 담당
 -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취합된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를 진행

【 표 3-13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구성

구분	역할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분야, 지원방식, 기준/절차 등 결정, 사업선정 등 총괄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배분, 결산 등 사업의 주관부처 역할 담당
시·도	시·군·구 과제 취합 및 예산 배정
시·군·구	시·군·구: 사업 발굴 및 사업예산 집행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사업 선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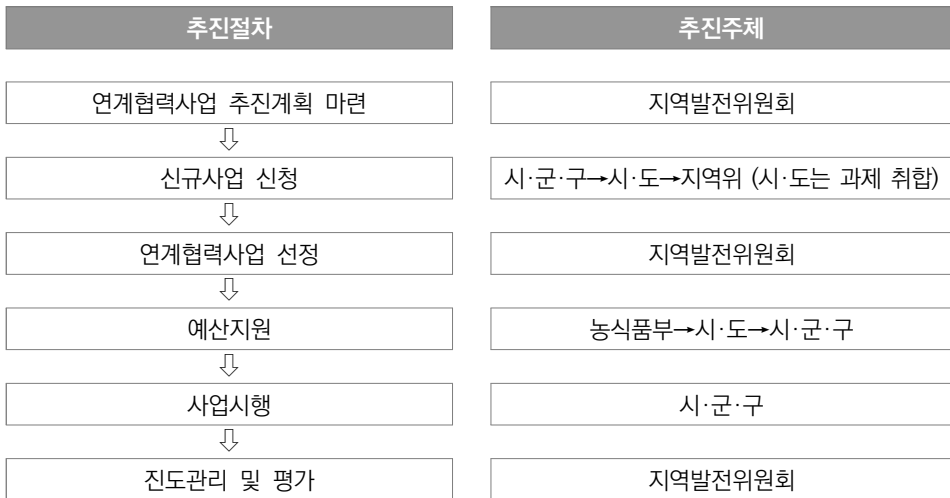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 추진절차

- 지역발전위원회가 기준/절차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되는 절차를 지님
- 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 중복성 검토, 대면평가(일부 현장실사 포함)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평가 대상 후보 사업의 20~30%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복성을 검토한 뒤 사업담당자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이 선정됨
 - 필요한 경우 제출한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비 기준 3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됨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전문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됨

| 그림 3-4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사업 선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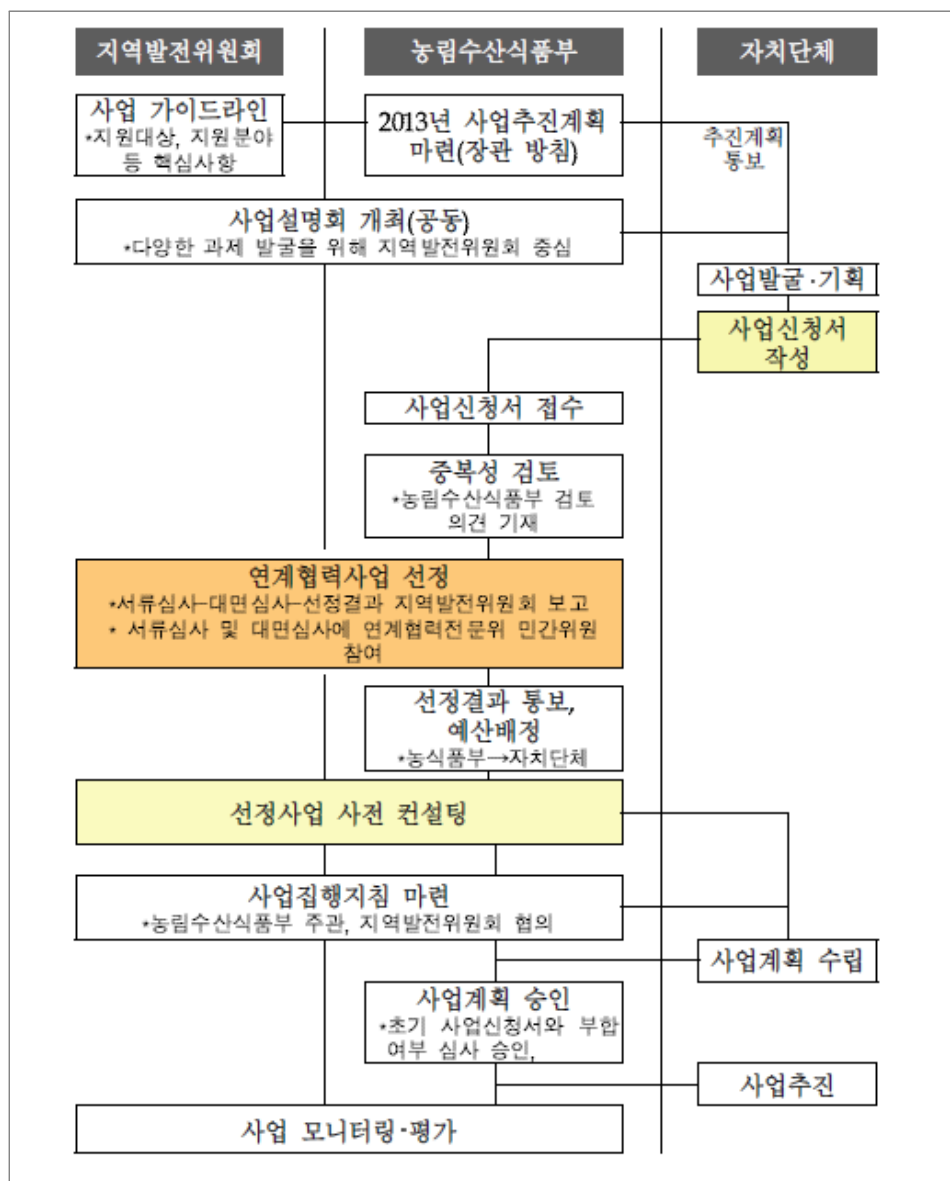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 표 3-14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평가 프로세스

구분	역할
평가위원회 구성	제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상위 20~30%내외에서 대상사업 선정
중복성 검토	서류심사 통과사업에 대해 기 시행사업(타 부처 포함)과의 중복성 검토
대면 평가	각 사업담당자의 사업설명 후 평가단 질의·토론을 거쳐 지원대상 순위 결정 ※ 제출된 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대상 선정 가능 ※ 국비 기준 30억원 이상 사업은 현장실사 등 타당성 검토 이후 선정
사업 선정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전문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보고 후 확정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그림 3-5]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절차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3)

3. 사업선정 기준 또는 항목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선정 기준은 크게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 4가지로 구성
- 성과창출 가능성은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효과를 판단하며, 세부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고용창출, 지역브랜드 제고, 생활여건 개선, 지역역량 강화 효과 등과 관련이 있음
 -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은 사업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지역발전정책 부합성, 사업 구체성, 자원분담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나눠먹기식의 사업은 배제하게 됨
 - 창의성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에 대한 가점으로 기추진 중인 유사, 중복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게 됨
 - 연계협력도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정도에 관하여 시군간 합의 수준에 대한 실적, 추진체계 적절성, 사업내용상 연계협력의 정도 등을 판단

【표 3-15】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선정기준

구분	내용	비고
성과창출 가능성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 육성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문화·관광개발로 지역브랜드 제고 효과 • 지역 생활여건 개선 효과 • 기타 지역역량 강화 효과
타당성· 실행가능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판단 (타당성 낮거나 나눠먹기식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정책 부합성 • 사업의 구체성 • 사업비/자원분담의 적정성 등
창의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에 가점 부여	기추진 중인 유사·중복사업 원칙적 배제
연계·협력도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정도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간의 합의 수준 (MOU, 협의회, 회의 등 실적) • 연계협력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내용상의 연계협력 정도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표 3-16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세부 평가항목

구분	내용	비고
I.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40점)	사업내용의 타당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이 공동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권역내 기존 자원·인프라 및 기 추진 중인 사업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사업내용의 구체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발 제시되었는가? 사업추진 절차, 방법, 동원자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II. 추진체계 및 수행주체 (30점)	추진체계의 연계·협력 수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주체간 연계협력수준이 얼마나 긴밀한가?
	사업수행주체의 역량(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주체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III. 사업내용의 연계·협력성 (20점)	사업의 지역간 합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간 사업이 상호 합의에 따라 분담되었는가?
	사업의 지역간 통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지자체별로 세부사업이 기계적으로 분할되어 있는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화(선택과 집중)되어 있는가?
IV. 자원조달 및 자원분담 계획(20점)	자원용도의 구체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에서 자원별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관리운영재원의 합리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사업비중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적정한가?
V. 성과창출 가능성(30점)	사업편익 달성가능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사업실행 가능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수단·재원 등을 동원하여 사업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VI. 사업설계의 완성도(20점)	지자체간 합의수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간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중앙부처와 사전협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가?
VII. 갈등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30점)	갈등관리의 적절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관간 분쟁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사후관리방안의 구체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VIII. 정부지원의 필요성(10점)	정부지원의 필요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3)

4.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 연계협력사업 발굴 원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을 위한 원칙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첫째, 향후 지역 간 갈등과 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배제하고 지역간 시너지출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사업의 유망성,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
 - 셋째, 사업의 발굴 및 개발의 과정에서 시군구, 시도, 전문가 등의 주체간의 상호 협력적 방식을 지향함
 - 넷째, 기존 하향식의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분권적, 자생적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지향함

【표 3-17】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원칙과 지향점

구분	내용
지역간 갈등 유발사업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갈등이나 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배제 • 지역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 사업 중심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단순한 협력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여에 무게
상호협력 방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거버넌스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발
분권적 협력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하향적 협력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 필요에 의한 자생적이고 분권적 상생협력발전을 겨냥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 절차

-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은 크게 사업 발굴, 협의 및 합의, 계획 수립 등 3가지 절차로 구성됨
 - 사업 발굴 단계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안을 도출

- 협의 단계는 발굴된 사업안을 대상으로 관계 지자체 간 조율을 통해 공동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임
 - 계획 수립 단계는 합의된 사업을 실행 가능한 형태의 연계협력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절차임
-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 아이템 발굴, 가능성 검토 및 사업안 선정 등의 절차로 구성됨
- 사전 준비에서는 지역 현황, 상위·부문 계획, 주민 수요 등을 검토하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부 공감대를 형성
 - 사업 아이템 발굴에서는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기존사업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
 - 가능성 검토 및 사업안 선정에서는 발굴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안을 선정함
- 협의 및 합의 도출 단계에서는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합의 도출, 협약 체결 등이 포함됨
- 예비 협의 단계에서는 협력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 간의 기초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의 기본 방향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
 -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서는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 내용, 추진일정, 재원 분담 등 핵심 사항을 논의함
 - 합의 도출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 역할 분담, 예산 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형성하여 공동 추진 기반을 확립함
 - 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의 비준을 거쳐 협력 의지를 공식화함
- 계획 수립 단계는 사업목표 설정, TFT 구성, 사업계획 수립으로 구성되며, 합의된 사업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사업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공동 추진을 통해 달성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를 구체화함
 - TFT 구성 단계에서는 지자체 실무자 중심으로 계획수립 전담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적 조정체계를 마련함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내용, 추진체계, 자원조달 방안, 일정,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함

| 표 3-18 |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절차

	구분	내용
사업 발굴	사전 준비	지역 현황, 관련 계획, 주민수요 파악과 공감대 형성
	사업 아이템 발굴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발굴
	가능성 검토/사업안 선정	발굴된 아이템의 사업가능성 검토, 우선순위 도출
협의 및 합의	예비 협의 진행	실무자 중심 타당성 검토 및 협의절차 사전협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협의기구 구성, 세부사업 및 자원분담 등 협의 진행
	합의 도출	주요 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도출
	협약 체결	협약서 작성 및 관련기관 비준
계획 수립	사업목표 설정	연계협력 사업을 통한 공동의 최종 목표 설정
	TFT 구성	실무 담당자 중심의 계획수립 TFT 구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내용, 추진체계, 자원조달, 사후관리 등 계획수립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을 참고하여 발굴 단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음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선정기준 후보 도출 및 의견수렴 필요성

□ 선정 기준으로서 검토 항목(안)

- 사례분석을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시 검토항목으로 정책부합성, 실행가능성, 성과창출가능성, 지속가능성, 차별성, 연계·협력성을 도출
 - 정책부합성은 사업이 법률, 상위계획 또는 해당 계획과 일관되게 연계되어 정책 취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실행가능성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기한 내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함
 - 성과창출 가능성은 사업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사업목표를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속가능성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핵심 가치로서 지속가능 발전이나 균형성장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
 - 차별성은 지역의 고유자원·특성·경관 등의 활용 수준이나 타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연계·협력성은 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구조, 역할·재정 분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협력의 실효성을 판단

[표 3-19] 사업 선정 기준으로서 검토 가능한 항목

구분	내용	비고
정책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상위계획, 국정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 계획 내에서 기본방향과 유기적 연계성 	해안권·내륙권
실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내용, 절차 등의 구체성과 타당성 • 지자체 추진의지와 기한 내 사업 추진 가능성 	해안권·내륙권 및 연계협력사업 공통
성과창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해안권·내륙권 및 연계협력사업 공통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친환경성 • 국가균형성장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여도 	해안권·내륙권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및 고유자원의 활용 및 연계 수준 • 기존에 추진 중인 타 사업과의 차별성 	해안권·내륙권 및 연계협력사업 공통
연계·협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연계협력 정도 또는 추진 실적 • 역할분담/비용·편익 적절성과 분쟁 조정 방안 	연계협력사업

□ 도출된 항목에 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을 위해 도출된 기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실무 및 전문지식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함
 -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정 기준과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지식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선정 기준과 중요도에 대해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수렴도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정책은 시·도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지역 발전 정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여건 고려 필요
 - 8개 시·도별 협력구조, 행정·재정 역량, 지리적 여건 등이 상이하여 사업선정 기준(안)에 대하여 지자체 실무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며, 상향식 계획수립과 객관적 기준 정립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정책 목적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체크리스트 제공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점사업이 검토 없이 단순히 취합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합한 사업이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역점사업이 검토 없이 단순히 예산 확보 목적으로 제안되지 않고,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함
- 지자체가 제안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자체 검토하여 부적정 사업이 자연스럽게 스크리닝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

- 체크리스트는 공통사업, 신규사업, 기존사업 등 사업의 세부적인 유형별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활용도를 제고
- 체크리스트에는 사업의 내용적 측면 외에도 법적 기준이나 양식 준수 등의 검토 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부적정 사업이 사전에 제외되도록 함

□ 다층적인 협의·조정 프로세스 마련

-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상향식을 지향하는 만큼,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시도, 시군, 행안부의 다층적인 협의 및 조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자체는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깊지만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적 효과나 정책 취지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반대로 중앙부처는 국가 정책 방향과 정책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지만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양측의 보완적 협의 구조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사업 제안-검토-조정 과정에서 시·군·구와 시·도, 시·도와 행안부 등 단계적 협의·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선별되도록 절차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 필요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 설정

- 연계·협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정책의 핵심 가치이자 차별적인 요소이나, 실제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발굴·추진되기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연계협력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상충,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행정구역 단위 책임 구조 고착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
- 이와 같은 연계협력의 한계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계협력에 관한 기준, 범위, 요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계협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는 지자체가 사전에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가이드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
 - 협력사업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역할분담, 비용·편의 배분 등 복합적인 조정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발굴-협의-계획수립 등 각 단계에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과 검토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연계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협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협의회 등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도 필요함
 -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검토할 경우 지역의 범위를 넘는 협력 가능성이나 파급효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자문 또는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연계 가능성, 보완 방향, 공동추진의 효과 등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
 - 이는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협력 구조 설계, 중복성·경쟁 요소 조정 등 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제 4 장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실무·전문지식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선정 기준(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안) 도출의 근거를 마련
-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약 2주에 걸쳐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 대상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인프라, 지역 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음

| 표 4-1 |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목적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공무원·전문가 의견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선정 기준(안) 마련	-
기간	2025.10.13.(월) - 10.24.(금)	약 2주
대상	지역개발, 도시계획, 인프라 등 관련 전문가	
방법	온라인 조사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기본현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여건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추진프로세스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평가항목) 	약 25문항

2. 응답자 현황

- 설문조사에는 총 36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도시계획·지역개발 분야, 5년 이상 10년 이하 경력자의 참여 비중이 높음
 - 응답자 소속이 경우 연구기관(국책)이 19명(52.8%), 연구기관(지방)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각각 8명(22.2%)을 차지함

【표 4-2】 응답자 현황

구분	정책과제	응답자 수	비중
지역 구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8개 시·도)	32	88.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외	4	11.1
소속	대학	1	2.8
	연구기관(국책)	19	52.8
	연구기관(지방)	8	22.2
	중앙행정기관	8	22.2
전문 분야	도시계획·지역개발	19	52.8
	산업·경제	3	8.3
	교통·물류·SOC	1	2.8
	환경·에너지	1	2.8
	관광·문화	2	5.6
	법률·행정	9	25.0
	기타(지방재정)	1	2.8
경력	3년 이하	1	2.8
	3년 이상 5년 이하	8	22.2
	5년 이상 10년 이하	13	36.1
	10년 이상 20년 이하	8	22.2
	20년 이상	6	16.7
관련 활동 경험 ¹⁾	있음	18	50.5
	없음	18	50.0
합계		36	100.0

주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및 기타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과 계획 수립 관련 활동을 의미함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여건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현재 발전 수준에 대하여 약간 저조(19건, 52.8%)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보통(12건, 33.3%)이 두 번째를 차지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의 평균 점수(5점 만점)는 2.5점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표 4-3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구분	매우 저조	약간 저조	보통 수준	약간 높음	매우 높음	합계	평점
응답수	1	19	12	4	0	36	2.5
비율	2.8	52.8	33.3	11.1	0.0	100.0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잠재력

- 발전 잠재력에 대해 국토 중앙 위치로 초광역 협력의 강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토 중앙 위치에 따른 초광역 협력 강점의 응답이 20개(55.6%)로 가장 많으며,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의 응답이 7개(19.4%)로 두 번째를 차지
 - 1, 2순위 응답 합계 기준 역시 국토 중앙 위치에 따른 초광역 협력 강점이 41.7%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고,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30.6%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산림, 호수 등)의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잠재력으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1순위 응답 기준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산림, 호수 등)은 11.1%, 1, 2순위 응답 합계 기준 12.5%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 표 4-4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개, %)

구분	정책과제	응답 수	비중
1순위 응답 분포	국토 중앙 위치로 초광역 협력 강점	20	55.6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산림, 호수 등)	4	11.1
	우수한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1	2.8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	2	5.6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	7	19.4
	풍부한 인적자원 및 혁신역량	1	2.8
	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 기반	0	0.0
	기타(기타의견: 수도권 접근성)	1	2.8
	합계	36	100.0
1, 2순위 응답 합계	국토 중앙 위치로 초광역 협력 강점	30	41.7
	청정한 생태·자연환경(산림, 호수 등)	9	12.5
	우수한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4	5.6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	3	4.2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	22	30.6
	풍부한 인적자원 및 혁신역량	2	2.8
	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 기반	1	1.4
	기타(기타의견: 수도권 접근성)	1	1.4
	합계	72	100.0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저해요인

- 중부내륙연계발전의 발전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1순위 응답 기준, 지역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38.9%)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13.9%), 연계·협력의 경험 및 문화 부족(11.1%)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 2순위 응답 합계 기준, 지역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27.8%), 지형적 제약과 공간적 단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 부족(각 12.5%)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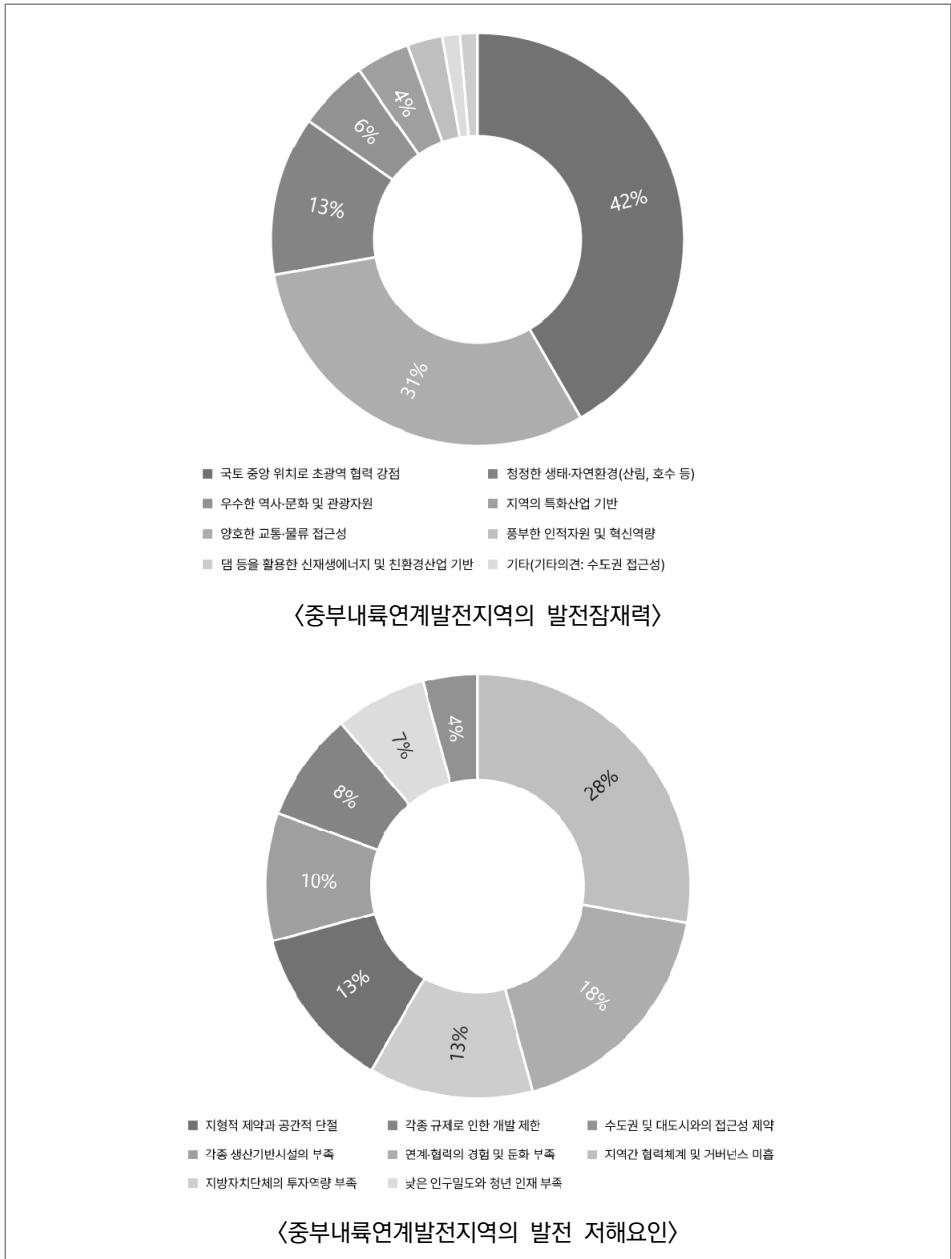
-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의 의견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자연환경으로 인한 지형적 제약과 이에 따른 규제(개발 제한 등) 등 발전 저해요인도 동시에 나타남

【 표 4-5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개, %)

구분	정책과제	응답 수	비중
1순위 응답 분포	지형적 제약과 공간적 단절	3	8.3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	5	13.9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 제약	1	2.8
	각종 생산기반시설의 부족	3	8.3
	연계·협력의 경험 및 문화 부족	4	11.1
	지역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	14	38.9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 부족	3	8.3
	낮은 인구밀도와 청년 인재 부족	3	8.3
	합계	36	100.0
1, 2순위 응답 합계	지형적 제약과 공간적 단절	9	12.5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	6	8.3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 제약	3	4.2
	각종 생산기반시설의 부족	7	9.7
	연계·협력의 경험 및 문화 부족	13	18.1
	지역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	20	27.8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 부족	9	12.5
	낮은 인구밀도와 청년 인재 부족	5	6.9
	합계	72	100.0

| 그림 4-1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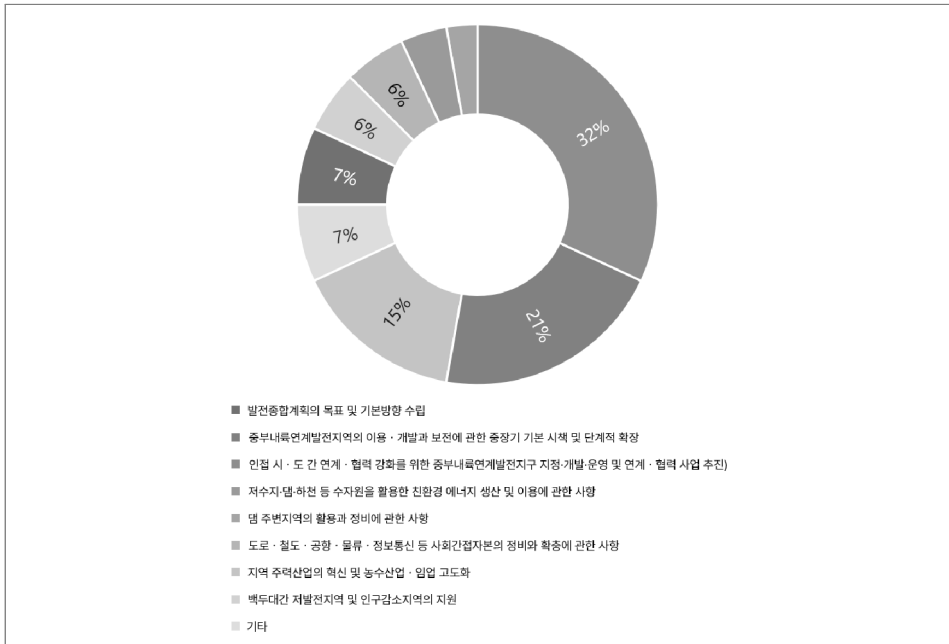


주: 1,2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내용 중에서 시급한 요인

- 발전종합계획 수립(법 제6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시급한 요소에 대하여 인접 시·도간 연계 강화와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응답이 가장
 - 1순위 응답 기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41.7%)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며, 중장기 기본시책 및 단계별 확장(16.7%),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11.1%) 순서를 나타냄
 - 1,2 순위 합계를 기준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31.9%)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며, 중장기 기본시책 및 단계별 확장(20.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 고도화(15.3%)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행정체계 통합 변경, 지자체 권한 재편, 광역 지방정부 구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있었음

| 그림 4-2 |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에서 시급한 요소에 대한 응답 분포



주: 1,2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표 4-6 | 법률 제6조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 중에서 시급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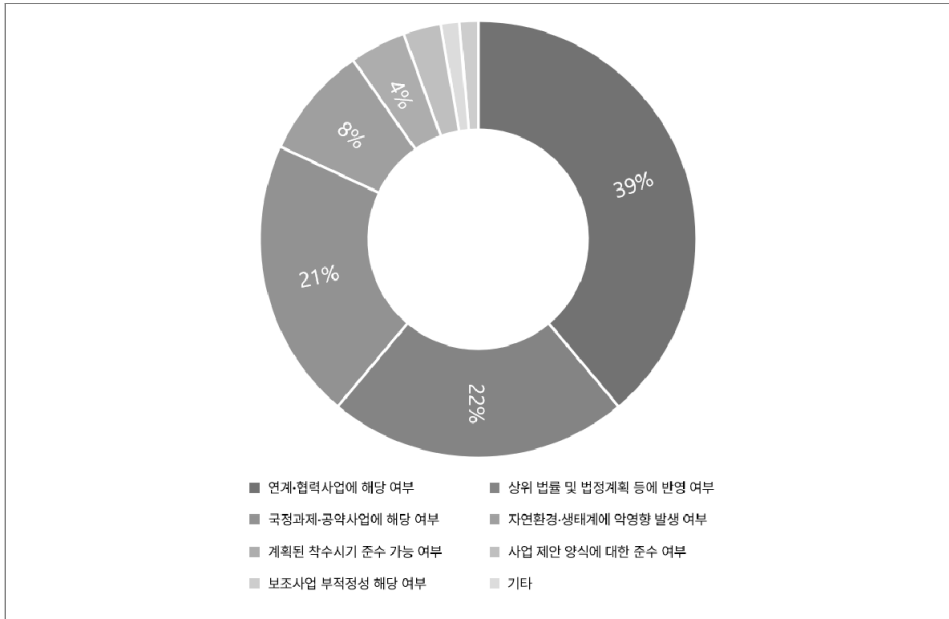
구분	정책과제	응답수	비중
1순위 응답 분포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3	8.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단계적 확장	6	16.7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15	41.7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8.3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1	2.8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4	11.1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 고도화	2	5.6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0	0.0
	기타	2	5.6
	합계	36	100.0
1, 2순위 응답 합계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5	6.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 및 단계적 확장	15	20.8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23	31.9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4.2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2	2.8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4	5.6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 고도화	11	15.3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4	5.6
	기타	5	6.9
	합계	72	100.0

2. 사업선정 절차와 추진체계

□ 사업 제안 시 지자체 자체 검토 항목

- 사업 제안 시 지자체의 자체적인 검토 기준에 대해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여부,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여부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기준, 연계·협력사업에 해당 여부가 20개(55.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며, 국정과제·공약사업 해당 여부(25.0%), 상위 법률 및 법정계획 등 반영 여부(11.1%)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 2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해당 여부(38.9%), 상위 법률 및 법정계획 등 반영 여부(22.2%), 국정과제·공약사업 해당 여부(20.8%)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제안 양식과 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그림 4-3 | 지자체의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제안시 자체 검토항목 우선순위



주: 1,2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표 4-7 | 지자체의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제안시 자체 검토항목 우선순위

구분	정책과제	응답수	비중
1순위 응답 분포	국정과제·공약사업에 해당 여부	9	25.0
	상위 법률 및 법정계획 등에 반영 여부	4	11.1
	연계·협력사업에 해당 여부	20	55.6
	자연환경·생태계에 악영향 발생 여부	1	2.8
	사업 제안 양식에 대한 준수 여부	0	0.0
	계획된 착수시기 준수 가능 여부	1	2.8
	보조사업 부적정성 해당 여부	0	0.0
	기타(소요 예산 확보 가능성)	1	2.8
	합계	36	100.0
1, 2순위 응답 합계	국정과제·공약사업에 해당 여부	15	20.8
	상위 법률 및 법정계획 등에 반영 여부	16	22.2
	연계·협력사업에 해당 여부	28	38.9
	자연환경·생태계에 악영향 발생 여부	6	8.3
	사업 제안 양식에 대한 준수 여부	2	2.8
	계획된 착수시기 준수 가능 여부	3	4.2
	보조사업 부적정성 해당 여부	1	1.4
	기타	1	1.4
	합계	72	100.0

□ 지역간 연계·협력의 범위

○ 연계·협력의 범위로 기능적 연계 25개(28.4%), 행정적 연계 24건(27.3%), 재정적 연계 23건(26.1%), 지리적 연계 16건(18.25)으로 대체로 유사한 응답 비중을 나타냄

표 4-8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간 연계협력의 범위(중복 응답)

구분	행정적 연계	재정적 연계	지리적 연계	기능적 연계	합계
응답수	24	23	16	25	88
비율	27.3	26.1	18.2	28.4	100.0

□ 적정 규모의 자원 배분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자원 배분에 관하여 일반지역의 국비 비중은 평균 52.2%,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국비 비중은 평균 62.6%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지역에 대한 국비 비중은 배려가 필요한 지역(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비 약 10%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표 4-9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적정한 자원 배분 수준(평균)

구분	국비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일반 지역	52.2	26.3	21.5
배려가 필요한 지역	62.6	22.5	14.9

□ 사업선정 평가위원의 구성

- 사업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4~5명과 6~7명이 각각 36.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이 보였으며, 평가위원의 자격으로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47.2%)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표 4-10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평가를 위한 위원 수

구분	3명 이하	4~5명	6~7명	8명 이상	합계
응답수	0	13	13	10	36
비율	0.0	36.1	36.1	27.8	100.0

| 표 4-11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평가위원의 자격 검토 항목

구분	정책과제	응답수	비중
평가위원 검토항목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	4	11.1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등 전문성 검토	1	2.8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 경력	10	27.8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17	47.2
	유사 사업 평가 또는 자문 경험	4	11.1
	총합계	36	100.0

3. 사업의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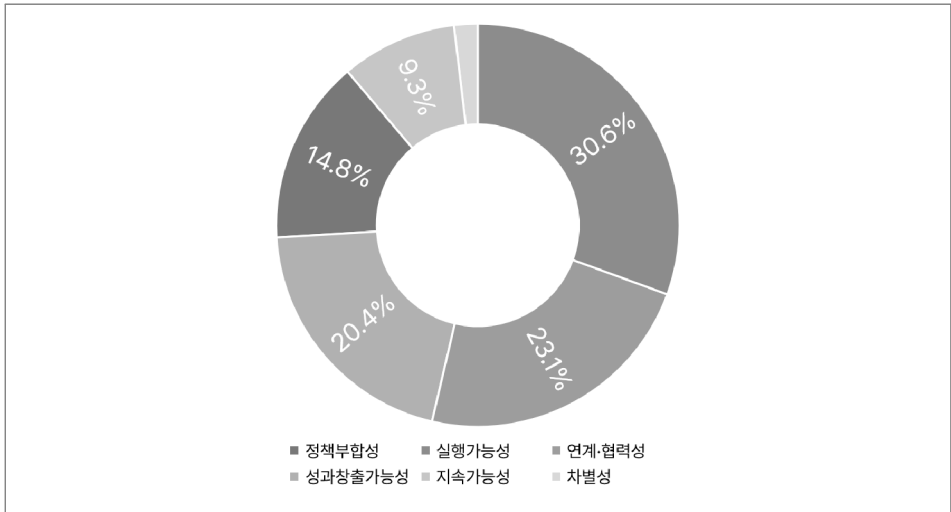
□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중요도

- 사업 선정 기준의 중요도 대한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성(38.9%)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내며, 실행가능성(27.8%), 성과창출 가능성(13.9%)의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 2, 3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행 가능성(30.6%)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연계·협력성(23.1%), 성과창출 가능성(20.4%)의 순서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표 4-12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구분	정책과제	응답수	비중
1순위 응답 분포	정책부합성	4	11.1
	실행가능성	10	27.8
	연계·협력성	14	38.9
	성과창출가능성	5	13.9
	지속가능성	3	8.3
	차별성	0	0.0
	합계	36	100.0
1, 2, 3 순위 응답 합계	정책부합성	16	14.8
	실행가능성	33	30.6
	연계·협력성	25	23.1
	성과창출가능성	22	20.4
	지속가능성	10	9.3
	차별성	2	1.9
	합계	108	100.0

[그림 4-4]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분포



주: 1, 2, 3순위 응답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

□ 정책부합성의 세부항목별 중요도

- 정책부합성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법의 정책적 취지와 목적 부합성이 가장 높은 평점(8.3)을 나타냄
 -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목표와 유기적인 연계성은 평점 7.5점, 국정과제, 대통령·도지사 공약사항, 상위계획의 반영도는 평점 7.0으로 나타남
 - 추가 의견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발전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국가균형성장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자연 환경 계획·산림 관리 대책과의 부합성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표 4-13]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정책부합성)

구분	정책과제	평점
정책 부합성	중부내륙연계발전법의 정책적 취지와 목적 부합성	8.3
	국정과제, 대통령·도지사 공약사항, 상위계획의 반영도	7.0
	시도발전계획(안)상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7.5

□ 실행가능성 세부항목별 중요도

- 실행가능성 세부 항목별 중요도의 경우 사업계획 구체성과 타당성이 가장 높은 평점(8.5)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대상지, 시행자 선정, 예산 투입, 행정절차 이행 수준은 평점 7.9점,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의 평점은 7.8점으로 나타남
 - 추가 검토 항목으로 제도·행정적 가능성의 평가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의 적절성과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또한 재정투자계획 반영 여부, 예산 항목의 적절성, 그리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시 공동의 이익 추구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14】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실행가능성)

구분	정책과제	평점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내용, 주체, 절차, 방법, 예 등) 구체성과 타당성	8.5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관련 사업 추진 경험 등)	7.8
	사업대상지, 시행자 선정, 예산 투입, 행정절차 이행 수준	7.9

□ 연계·협력성 세부 항목별 중요도

- 연계·협력성에 대한 세부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서 추진체계, 예산 투입, 내용, 사후관리 등 역할분담의 적절성(8.8점)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지자체간 연계협력 정도의 평점은 8.3점,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및 분쟁 발생시 조정계획의 평점은 7.9점으로 나타남
 - 추가 검토 항목으로 연계·협력 잠재력, 실무회의 등 활동성, 단독사업과의 효율성 우위, (공동)사업 추진 조직, 관광자원 연계, 공동산업 육성 의견 제시

【표 4-15】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연계협력성)

구분	정책과제	평점
연계· 협력성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정도(연계협력 추진실적, 합의 등)	8.3
	추진체계, 예산투입, 내용, 사후관리 등 역할분담의 적절성	8.8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및 분쟁 발생시 조정계획	7.9

□ 성과 창출 가능성 세부 항목별 중요도

- 성과 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주민의 편익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의 달성 가능성이 각각 평점 8.3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액, 고용 창출, 지역소비 활성화 등)의 중요도 평점은 8.0점으로 나타남
 - 성과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추가 의견으로는 주민체감 만족도, 민간투자 유치여부, 그리고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4-16]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성과창출가능성)

구분	정책과제	평점
성과창출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액, 고용 창출, 지역소비 활성화 등)	8.0
	사회적 파급효과(주민 편익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8.3
	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의 달성 가능성	8.3

□ 지속가능성 및 기타 부문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

- 지속가능성 및 기타 부문의 세부항목별 중요도에 대하여 지역 고유자원 활용(특화산업, 관광 등의 활용·연계 수준)이 가장 높은 평점(7.9점)을 나타냄
 - 이 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활성화(7.8점),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성장 기여도(7.7점), 자연환경/산림관리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7.5점),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7.1점) 순서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추가 의견으로 연계협력의 지속가능성, 지역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자연환경 보전(환경적 파급효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도권 상류 지역 환경 고려)에 관한 의견도 제시

표 4-17 | 선정 기준별 세부 검토 항목별 중요도(지속가능성 및 기타)

구분	정책과제	평점
지속 가능성 및 기타	자연환경/산림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향 정도	7.5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성장 기여도	7.7
	지역 고유자원(특화산업, 관광) 등의 활용·연계 수준	7.9
	기존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7.1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활성화	7.8

□ 기타 의견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및 권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계·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사전 갈등조정 장치와 조율 절차의 제도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
 - 자원과 역량의 격차가 큰 지자체 간 사업 선정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권역 내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상향식 발굴과 제도적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충북 북부-강원, 충북 중부-충남 등 지리적·경제적 구조가 다른 지역 간 협력은 단일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협력체계 설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
 - 자연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계획 수립,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지역 실수요 기반의 상향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재원 조성, 기초-광역 간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별도의 유형 구분 및 선정체계 구축 필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초광역 협력의 잠재력과 추진체계상의 한계 공존

-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부내륙발전연계지역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초광역 협력 강점의 발전 잠재력이 있지만,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역량과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내륙발전연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은 보통 이하 수준을 나타내며, 국토 중앙 위치에 따른 초광역 협력의 강점과 동시에 지역 간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부재라는 제약요인이 공존
- 중부내륙발전연계지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31.9%)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음
 - 이는 연계·협력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핵심적이고 차별적 가치로서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별도 선정 기준과 방향성 제언의 필요성

-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핵심 가치인 연계·협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을 독립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비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연계·협력사업 비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전종합계획이 기존의 지역 개발 계획과 유사해져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력 기반이 약해져 실행력 확보에 부정적일 수 있음
- 지자체간 협력은 이해관계와 역할분담 등 조율이 필요하므로 연계·협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협력 수준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협력사업으로 구성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절차 및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
 - 이를 통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력사업 발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발전종합계획이 지역 간 공동 발전 전략으로 기능하도록 함
- 지자체 간 협력의 경험 부족과 이해관계 차이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협력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과 가이드를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음
 - 연계·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업 발굴에서부터 합의와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

2.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범위 설정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지리적·기능적 연계를 포괄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범위 설정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역간 연계협력의 범위는 행·재정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지리, 기능적인 연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
 - 연계협력의 범위에 대한 응답은 기능적 연계(28.4%), 행정적 연계(27.3%), 재정적 연계(26.1%), 지리적 연계(18.2%)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
 - 연계협력은 공동의 행정절차나 자원 분담을 넘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공유하는 백두대간, 수자원 등의 자원 공유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성, 파급효과 확산 등 기능적, 실질적 연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확장된 연계협력의 범위를 통해 상호 시너지 창출, 중복·경쟁적 사업 구조의 완화, 권역 단위 발전 효과의 극대화 등이 가능해지므로 향후 사업 선정 기준에서도 연계 범위의 실질성과 효과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종합적 관점에서 사업 검토를 위한 평가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정책은 시·도발전계획안을 토대로 상향식으로 수립되는 정책이며,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 또는 자문위원회가 필요
 -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연계·협력 촉진의 관점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문 또는 실무지식을 지닌 위원회 검토 절차가 필요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사업 선정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4~5명 또는 6~7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36.1%로 가장 높았고, 평가위원의 자격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47.2%)와 '실무경력'(27.8%)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남
 - 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 지역 주도형 정책 특성을 지니는 만큼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연계협력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
- 따라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정책 취지를 유지하되, 연계협력의 실질성과 사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객관성이 균형을 이루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이해하는 인사와 더불어, 연계협력의 구조적 타당성·정책적 필요성·사업 간 조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중앙부처 실무자가 함께 참여해야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연계협력 시 비용 부담과 효과 분배가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사업 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3. 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안) 마련 및 지자체 의견수렴 필요

□ 사업 선정 검토 기준별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검토 우선순위는 실현 가능성(30.6%), 연계·협력성(23.1%), 성과창출 가능성(20.4%)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초광역 협력 기반의 실행 가능한 사업군을 구성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별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지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정책 부합성에서 중부

- 내륙연계발전법의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계·협력성에선 추진체계와 역할 분담의 적절성, 성과 창출 가능성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역 고유자원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선정 기준(안)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의 필요성

- 도출된 사업선정 기준(안)이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8개 시·도는 지역별 특성과 사업 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기준(안)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된 사업선정 기준(안)에 대하여 시·도 담당자 및 시도연구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2025년 11월 12일(수) 14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연구진, 행정안전부 담당자, 8개 시·도 담당자 및 시·도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 연구 진행 상황과 함께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선정 기준(안)을 도출하여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하였음
 - 주요 의견으로 연계·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부담 완화 비중, 사업 선정 기준(안)에 대한 항목별 정의 구체화, 지표 간소화 등이 있음
- 시·도 담당자 및 시·도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장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표 4-18 | 시·도 간담회를 통한 사업선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구분	내용	비고
일시	2025.11.12.(수) 14:00 - 16:00	
장소	행정안전부(세종)	
목적	사업선정 기준(안)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참석	연구진, 행안부, 8개 시·도 및 시·도연구원	

| 표 4-19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 간담회 주요내용

구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 및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이 어려우므로 연계·협력사업의 선정 비중 등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 연계협력의 범위를 행·재정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백두대간, 댐·수자원, 산림·생태축 등 공동의 자원과 기능적 연계까지 포함하여 확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공유하는 자원의 이용 범위, 파급효과의 인접 시·도까지 확산되는 지리·기능적 연계협력까지 연계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
지자체의 현실적인 부담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발굴, 시·도발전계획(안) 수립이 어느정도 추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작성 가능한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여 조정 필요 • 기준(안)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차별성 등 지침상의 내용을 넘어서 새롭게 작성이 되어야하는 항목에 대한 부담완화가 필요함 • 지자체 체크리스트는 필수 제출자료라기보다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중앙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로 설정 • 차별성은 사업별 차별적인 요소를 마련하기보다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중복성 검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완화
연계·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중앙차원의 조정 및 명확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군 간 이해관계 상충, 행정력 차이, 예산 주머니 분리 등으로 실제 연계협력사업 발굴·합의·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각 지자체는 자체 핵심사업과 기존계획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타 시·도와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 • 일정 부분 중앙 차원에서 기존의 개별사업들을 묶어주는 기획·조정 기능, 예컨대 백두대간 축, 금강·댐·수자원 축, 동서·남북 트레일 축 등 큰 그림을 제시해 주고, 여기에 각 시·도가 사업을 얹어 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연계협력·신규사업 등에 대해 선도사업 선정, 가점 부여, 향후 변경계획에서의 우선 반영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해줄 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확보 가능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신규사업 30% 목표를 제시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목표에 해당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의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되고 실행력 있는 사업들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함 • 산림관리대책, 자연환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신규사업이 각 부처의 중기계획·예산에 반영되는 방향에서 접근도 필요함
평가기준에 대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이 복잡하고 과도하게 많으면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존재 • 평가기준 및 항목이 지역의 맥락과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 필요

제 5 장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및 추진체계(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사업 선정 기준(안)

제3절 사업 선정 추진 방향(안)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및 추진체계(안)

제1절

기본 방향

1. 사업 선정의 기본방향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 상향식 체계 확립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에 있고,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추진체계를 지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에 따른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사업선정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은 시·도발전계획안에 기초한 상향식 체계를 갖기 때문에, 사업 발굴 단계에서 지역의 요구·환경·제약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나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백두대간, 수자원 등 공통의 자원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와 프로세스를 마련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실질적 수요와 지역의 현안이 반영될 때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동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사업 발굴 과정에서 정책의 취지와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적정 사업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함

-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함
- 나아가, 기초-광역-행안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층적 협의절차를 마련함

□ 상위 법률 및 계획과의 조화와 전략·분야간 균형성 확보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은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 차원의 다층적인 계획체계 안에서 정합성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둘러싼 다층적 계획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간 중복이나 충돌, 재정투입의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상위 법률 및 유관계획, 해당 정책 내에서의 기본방향 등과 유기적으로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토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산림관리대책 등 타 상위 계획과 함께 시도발전계획안의 기본방향과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
- 나아가, 법률에 명시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나 발전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추진전략별로 사업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함
 - 한정된 기간(32년까지)의 계획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략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전략이 과도하게 부각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시·도간 지속적인 협의·조정 체계 마련도 필요함
- 이와 같은 정책의 정합성과 균형성 확보는 사업선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검토 항목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지자체 간 조정·협의, 전략별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도 실질적인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실행력을 갖춘 사업의 선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은 '3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에 근거하는 만큼 주어진 계획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정된 시효기간 내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정책의 정당성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고,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동력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계획에 포함될 사업은 합리적인 재정투입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기간 내 구체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
- 현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신규 국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행력이 확인된 사업 또는 선제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반영을 추진함
 - 현재 기획재정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은 해당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추진력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단순 지역 숙원형 사업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되면, 중부내륙연계발전정책은 차별되지 못하고 실효성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 반대로 공동발전·연계협력에 기여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사업만으로 계획을 구성할 경우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나 차별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적정 조합도 필요함
 - 기존사업의 경우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사업,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이슈를 해소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
 - 신규사업은 배제하기보다, 사전 기획의 성숙도·정책적 필요성·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 등 실현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함

2.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 기본방향

□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연계·협력의 기반 구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상호신뢰를 전제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결과가 공동의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임
 - 지자체별 여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연계·협력사업이라도 비용 부담과 편익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비용·편익의 불균형이나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은 협력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협력사업 선정 시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직결됨
- 연계·협력사업의 선정 시 지자체 간 역할분담의 합리성과 협력에 따른 시너지 창출 효과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반영
 - 협력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의 편익 창출을 유도
 - 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추구하는 초광역 협력의 핵심 가치인 공동의 이익을 선정기준상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제고와 정체성 강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백두대간, 수자원 등 공유하는 고유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를 지향하며, 국토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연계·협력사업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개발사업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공유하는 자연·생태·문화 자원을 공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백두대간, 주요 광역 수계, 산림·생태축 등 공통 공간 자원은 지역 간 협력의 핵심 기반이자 차별화 지점으로, 이를 활용한 공동사업은 중부

내륙권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정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의 범위는 행정·재정적 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지리적, 기능적 연계까지 확장하여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함
 - 예를 들어, 수자원 보호·활용, 생태관광 루트 구성, 산림·자연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환경산업 등은 지자체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확장된 관점은 연계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계획(국토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 등)과의 정합성도 제고하여 종합계획의 전략성을 높일 수 있음

□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연계·협력의 지속성 확보

-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간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문제 인식, 명확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추진될 때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은 상호 이익과 공동 목표에 기반해야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 상충, 추진 동기 차이, 협력 경험 부족 등으로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조직, 협의 경험, 정책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협력사업의 발굴·계획·집행의 체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효과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기획하거나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과 실무적 가이드 제공, 협력의 수준과 구조를 사업선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 협력의 수준(강도), 지자체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연계·협력에 따른 시너지 창출 효과성 등 협력의 실질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평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춘 협력사업이 선정되도록 유도
 - 나아가 연계·협력사업의 발굴부터 계획의 수립, 합의, 집행에 이르는 단계별 참고 사항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 과정에서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의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제2절

사업 선정 기준(안)

1. 사업 공통 선정 기준(안)

□ 정책부합성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은 크게 정책부합성, 실행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 지속가능성, 차별성 등 5개의 대분류와 가점으로 구성됨
 - 5개 대분류 기준 항목 내에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10개로 구성되며, 민자유치 또는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가점 항목으로 구성됨
- 정책부합성은 법률 및 정책 측면, 국정 방향 및 과제 측면, 시·도발전계획(안) 내부의 측면에서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함
 - 세부 기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에 따른 정책의 취지·목적 부합성, 국정과제·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등 3개로 구성됨
 - 법률·정책 취지·목적 부합성은 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과 시설투자 수준을 넘어 법률의 지향점(법률 제1조)을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지, 발전 종합계획(안)의 내용적 범위(법률 제6조)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 연관성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검토
 -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 연계성은 사업의 목적이 시·도 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 실행가능성

- 실행가능성은 사업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요도가 큰 기준에 해당함

- 세부 기준에는 사업계획·절차·방법·예산투입 등의 구체성과 타당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 의지와 역량이 포함됨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상의 추진내용, 절차, 방법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총사업비 산정이 합리성을 갖추고 국가 재정 조달 계획이 명확한지를 검토함
 - 지자체 및 사회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은 사업이 지자체장의 공약, 중장기 발전전략 등과 연계되어 추진 의지가 분명한지, 조직, 인력, 예산 확보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소지가 없고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함

□ 성과창출 가능성

- 성과창출 가능성은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함
 - 세부 기준에는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이러한 기대효과와 목적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포함됨
 -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생산, 투자 등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 삶의 질 개선, 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함
 - 사업의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은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료성, 이에 대한 달성 가능성 수준을 검토함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환경·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함
 - 세부 기준에는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자연환경·산림관리 등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됨
 - 균형발전 기여도 측면에서는 해당 사업이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 지역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 정도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환경적 영향과 저감대책 수준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보전-개발의 조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차별성

- 차별성은 신규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고유의 특화자원과 연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함
 -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공모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지, 만약 중복성의 우려가 있다면, 차별성과 보완성의 논리가 명확한지를 검토
 - 나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공유하는 자연·생태·문화·산림·수자원 등 특화자원의 활용 수준이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2.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기준(안)

□ 연계·협력성

-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공통기준과 더불어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실현 가능성과 연계·협력에 따른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함
 -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연계·협력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연계·협력의 수준과 역할분담의 균형성,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이 포함됨
 - 3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파급효과와 초광역적 협력 가치를 고려하여 추가로 가점 항목을 구성
- 연계·협력의 수준과 역할분담의 균형성은 실질적인 연계·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역할 배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 연계·협력 사업의 참여주체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협의사항이 존재하는지, 주체간 세부적인 역할이 명확하고 균형있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함

- 연계·협력의 시너지 창출 효과성은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 발생 가능성과 정도를 검토
 - 단독사업 추진과 비교하여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인 상승효과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공동 자원의 활용 수준은 어느정도 인지를 검토함

표 5-1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기준(안)

구분		내용
사업 공통 선정 기준	정책부합성	법률·정책 취지·목적과의 부합성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 연관성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 연계성
	실행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지역사회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사업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지속가능성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영향 정도		
차별성	유사·중복성 검토 및 지역 특화자원 연계성	
가점 항목	민자유치 또는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한 노력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추가 기준	연계·협력성	연계·협력의 수준과 역할 분담의 균형성
		연계·협력의 시너지 창출 효과성
	가점 항목	3개 이상 시·도의 연계협력 사업

3. 지자체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안)

-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을 넘어 지역 여건과 목적 부합성을 갖춘 사업이 선별되기 위해서 발굴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
- 지자체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통, 기존, 신규, 연계·협력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제안하는 체크리스트는 의무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에 해당하며, 검토 항목은 지자체 및 사업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함

【표 5-2】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안)

구분	내용	O	X	비고
공통 기준	1.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2. 국정과제, 공약 및 기타 상위계획 등과 정합성을 확인하였는가?			
	3. 시도발전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연계성이 있는가?			
	4. 사업의 추진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사업 계획기간은 법률의 시효기간(2032년) 이내에 해당하는가?			
	6. 사업의 정량적, 정성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7.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존 사업	1. 사업예산의 기 투입 또는 차년도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3.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또는 상위계획상의 근거가 있는가?			
신규 사업	1.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2.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가?			
	3.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미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없는가?			
	4. 사업추진에 관한 법적 규제나 제약사항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5. (SOC 사업) 해당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연계 협력 사업	수시로 지자체간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였는가?			
	2.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3.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사업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는가?			
	4. 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는가?			
	5. 협력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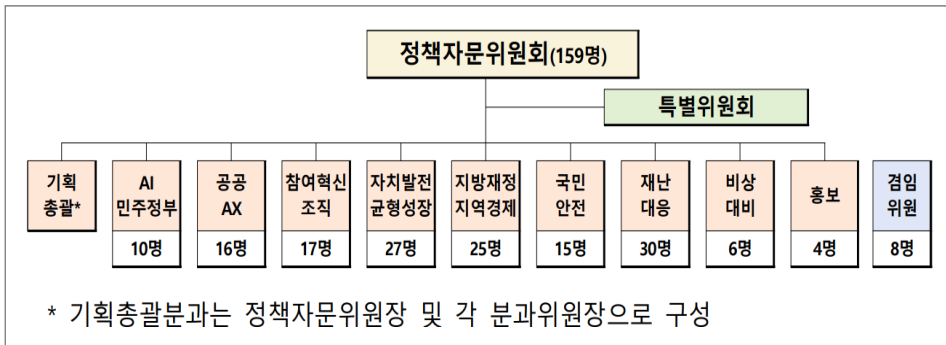
사업 선정 추진 방향(안)

1. 추진체계(안)

-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취지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적합성 검토 및 협의·조정, 시·도 발전계획(안) 수립을 담당
 - 시·군·구는 정책 취지와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적합성 검토 및 해당 시·도와 사업 협의·조정을 수행함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안한 사업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시·도간 연계·협력사업 포함)을 취합하여 시·군·구, 행정안전부와 협의·조정을 수행하고, 이를 시·도 발전계획안에 반영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정책 개발,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협의를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협의 역할을 수행(법 제12조 1항)하고,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 반영된 시·도발전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의 평가, 시·도와 사업 선정에 대한 협의·조정 및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안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심의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사업선정 기준에 맞추어 사업별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의 조정·보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컨설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지역개발,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학식을 갖추고 지역의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사업별 평가 결과와 조정·협의를 거쳐 선별된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기본 정책, 장·단기 발전계획, 새로운 정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 수행
- 2025.11.24 10개 분과 159명으로 구성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자치발전·균형성장 분과는 25명의 자문위원이 위촉

|그림 5-1 |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음영 처리된 심의위원회는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1.25.).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2. 추진절차(안)

□ 지자체의 사업 발굴·조정

-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 절차, 일정, 참고사항 등을 확정하여 사업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달함
- 시·군·구, 시·도는 사업선정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부적정 사업을 검토하며, 시·군·구와 시·도 차원에서 사업의 조정·협의를 진행함
 - 사업 선정 기준과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항목(안)을 활용하여 지자체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정 사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조정·협약이 완료된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시·도 발전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립·제출함

-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예산 투입이 확정된 기존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사업이 적정 수준에서 신청될 수 있도록 함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투자계획은 구체성을 갖추고, 적정 수준에서 총사업비 및 국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상 최대 국고보조율은 80%,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18~30)의 국비 비중은 약 70%(민간 제외)이며, 전문가 설문조사상 국비 지원 비율(평균)은 일반지역 52.2%, 배려가 필요한 지역 62.2%로 나타남

□ 사업의 검토 및 선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부적정 사업 제외 및 컨설팅 의견을 제시함
- 전문가 평가 의견을 토대로 시·도와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조정·협의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확정
 - 중부내륙연계발전 정책의 연계·협력, 지속가능발전 등 핵심가치를 반영한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일정 비중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차별성을 갖춘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도모함
 - 법률의 목적과 차별성을 갖춘 사업 선별 및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은 향후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사업 선정 기준과의 부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정책목표 달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절차에 반영할 필요
 - 사업의 부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발굴·협의 과정에서 1차 제외되고, 선정 평가 시 2차로 제외되도록 기준을 마련

□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진행함
-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발전종합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그림 5-2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절차(안)



*: 음영 처리된 심의위원회는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추진

3. 연계·협력 사업의 범위와 지자체 참고 절차

□ 연계·협력사업의 범위

- 연계·협력사업의 방식은 단순 협력에서부터 역할분담에 따른 공동의 업무 수행, 각종 시설의 공동 설치와 이용, 공동 투자사업 등을 포괄함
- 내용상으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자체간 행·재정적인 연계·협력뿐 아니라 지리적, 기능적으로 연계된 사업까지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일지라도 지역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사업효과가 인근 시·도까지 파급되는 경우 포함
 - 백두대간, 수자원, 특산품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공유하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공동브랜딩 등 지역활성화 사업 등

【표 5-3】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상의 연계·협력의 범위(안)

구분	내용
행정적 연계	지자체 간의 협의체 구성, 공동계획 및 의사결정 등 추진체계 연계성
재정적 연계	지자체 간의 사업비 등 투자자원을 공동으로 분담
지리적 연계	지자체간 지리적 인접성 또는 자연자원의 공유(백두대간, 강, 호수 등)
기능적 연계	사업 내용 또는 효과의 상호보완성과 동질성, 주민의 공동활용 여부 등

□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을 위한 참고 절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사업 아이টে을 발굴
 - 지자체 내 사업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부서와 중부내륙 담당부서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아이টে을 풀 마련
- 발굴된 사업 아이টে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할 사업의 리스트와 우선순위를 도출
 - 사업이 발굴·제안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별 추진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부적정 사업을 제외

- 협력 대상 지자체와의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추진사업안 및 우선순위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간 공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을 체결
 - 지자체간 사업 담당 실무자를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일정, 역할 분담, 자원분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진행
 - 실무자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간 공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진행 및 합의 도출
 -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작성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상호 협약을 통해 실천력을 확보
-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내용, 주체별 역할, 자원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상호 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사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진 중심 TFT를 통해 사업내용, 추진체계, 자원투자 등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표 5-4 | 중부내륙연계발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의 참고 프로세스

구분	내용
사업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내 사업 담당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제안 • 기획부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담당부서 공동 아이디어 취합
가능성 검토 및 추진사업(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별 추진가능성을 검토 • 지자체 공동 워크샵을 통해 추진사업안 및 우선순위 선정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내 TFT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자체간 합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절차, 역할분담, 자원 등 사전 협의 • 지자체간 공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합의 도출 •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한 합의서 작성 및 협약체결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합의된 내용에 기반하여 사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 • 실무진 TFT를 통해 사업내용, 추진체계, 자원투자 등 계획수립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을 참고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

국내 및 해외 문헌

- 국토교통부. (2014).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 (2024). 제4차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및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2021),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
-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 (2021).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2020).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2021).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1~2020).
-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2021).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국토해양부. (2010).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 국토연구원. (2017).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연구. 국토교통부.
- 김현호. (2013). 지역간 협력발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새 정부 정책의 과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25(4): 25-60.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 (20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발전계획안(공청회 보고서).
- 대구경북연구원. (2018).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
- 산림청. (20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림관리대책('25-'32)
- 지역발전위원회. (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가이드라인(안).
- 최용환. (202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충북 Issue & Trend,(51), 8-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매뉴얼.
- 환경부. (20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계획.
- 행정안전부. (201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법령 및 지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202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웹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확인일: 2025.7.30.)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30.).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1.17.).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1.25.).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여건과 연계협력 필요성

1. 귀하께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또는 기타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선정이나 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사업 또는 계획명:) ② 없음

2. 귀하께서는 현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저조 ② 다소 저조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3. 귀하께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주요 발전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국토 중앙 위치로 초광역 협력 강점 ② 청정한 자연환경(산림, 호수 등)
 ③ 우수한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④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
 ⑤ 양호한 교통·물류 접근성 ⑥ 풍부한 인적자원 및 혁신역량
 ⑦ 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 기반 ⑧ 기타()

4. 귀하께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주요 발전 저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지형적 제약과 공간적 단절 ② 각종 규제에 인한 개발 제한
 ③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 제약 ④ 각종 생산기반시설의 부족
 ⑤ 연계·협력의 경험 및 문화 부족 ⑥ 지역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미흡
 ⑦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 부족 ⑧ 낮은 인구밀도와 청년 인재 부족
 ⑨ 기타()

5. 다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법 제6조) 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 및 단계적 확장
 ③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④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저수지·댐·하천 등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⑥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⑦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⑧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 고도화
 ⑨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⑩ 기타()

11. 귀하께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평가위원의 자격 검토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정 지역과의 이해관계 여부
- ②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등 전문성 검토
- ③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 경력
- ④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 ⑤ 유사 사업 평가 또는 자문 경험
- ⑥ 기타()

중부내륙연계발전 사업의 선정 기준

1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 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정책부합성 법률의 취지, 상위계획 및 국정과제, 기본방향 등과 정합성
- ② 실행가능성 재원투자, 추진체계,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
- ③ 연계·협력성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정도, 역할분담의 적절성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등
- ④ 성과창출가능성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 균형성장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 ⑥ 차별성 지역 고유자원의 활용 및 연계,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등
- ⑦ 기타 ()

13. 정책부합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중부내륙연계발전법의 정책적 취지와 목적 부합성	1-----5-----10
2) 국정과제, 대통령·도지사 공약사항, 상위계획 반영도	1-----5-----10
3) 시도발전계획(안)상의 비전·목표와의 유기적인 연계성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4.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사업계획(내용, 주체, 절차, 방법, 예 등) 구체성과 타당성	1-----5-----10
2)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관련 사업 추진 경험 등)	1-----5-----10
3) 사업대상지, 시행자 선정, 예산 투입, 행정절차 이행 수준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5. 연계·협력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지자체간 연계협력 정도(연계협력 추진실적, 합의 등)	1-----5-----10
2) 추진체계, 예산투입, 내용, 사후관리 등 역할분담 적절성	1-----5-----10
3) 비용/편익 균형성 및 분쟁 발생시 조정계획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6. 성과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액, 고용 창출, 지역소비 활성화 등)	1-----5-----10
2) 사회적 파급효과(주민 편익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1-----5-----10
3) 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의 달성 가능성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7.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자연환경/산림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향 정도	1-----5-----10
2) 백두대간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성장 기여도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8. 창의성 및 기타 측면에서 다음의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1~10점)를 선택해주시시오.

1) 지역 고유자원(특화산업, 관광) 등의 활용·연계 수준	1-----5-----10
2) 기존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1-----5-----10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활성화와의 관련성	1-----5-----10
4) 기타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	

19. 중부내륙연계발전 또는 기타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선정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 2025-11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저 자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12월 10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